

해링턴플레이스 풍무(1BL) 입주자모집공고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2025.07.04. 포함)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주택의 순위확인서 발급 및 청약신청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1877-9877

주택유형	해당지역	기타지역			규제지역여부		
민영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 거주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 거주자(서울, 인천, 경기도)			비규제지역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택지유형			
없음	6개월	없음	미적용	민간택지			
구분	입주자모집공고일	특별공급 접수일	일반공급 1순위 접수일	일반공급 2순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5.07.04.(금)	25.07.14.(월)	25.07.15.(화)	25.07.16.(수)	25.07.23.(수)	25.07.31.(목) ~ 25.08.02.(토)	25.08.04.(월) ~ 25.08.06.(수)

1 공통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음.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06.30.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름.
- 2024.10.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민간 사전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24.10.01.부터 사전당첨자 지위를 유지한 상태에서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음. 다만, 사전당첨자 및 그 세대원이 다른 주택(APT, 계약취소주택, 규제지역 무순위)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사전당첨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여 사전청약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자격요건	6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1순위(12개월 이상,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		가입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청약신청 내용과 실제 청약자격의 일치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에 계약 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청약홈 및 LH청약플러스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각 1건씩 중복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간 또는 일반공급간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본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하고,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분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음.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람.(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함.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한 공급유형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음.

공급유형	당첨자 선정	예비입주자 선정	등호수 결정
특별공급	유형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추첨으로 선정	특별공급/일반공급 구분 없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
일반공급	순위별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름	(1순위)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순으로 선정(동점 시 추첨) (2순위)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입주자 수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유형별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특별공급 유형의 청약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기관추천 예비대상자 포함)을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이후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함.
- 주택형별 특별공급 청약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함.
- 주택형별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2순위 접수분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2019.12.06.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 수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함.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 특별공급 잔여물량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일반공급 잔여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물량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2018.05.0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다른 주택의 당첨자 발표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다른 주택의 당첨 내역은 무효 처리됨.

■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18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해링턴플레이스풍무.com>)에 공개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고,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람.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함), 최하층 주택의 분양금액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금액보다 높은 경우는 최하층 우선배정하지 않음.
-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분 또는 그 세대에 속한 분이 있는 경우에는 청약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함.
-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과 제3호에 해당하는 분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분에게 우선 배정함.
- 최하층 우선배정 신청자가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보다 많은 경우 최하층이 아닌 층을 배정받을 수 있으며, 적은 경우에는 최하층 우선배정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음.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됨.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음.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함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음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봄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

-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한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이거나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신청가능)
- 청약예금의 신청가능 주택규모 변경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가능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신청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 예치금 충족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가능
- 종전통장(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 기한 :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전환개설 완료 시 청약 신청가능
- * 종전통장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하여 청약하는 경우,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유형은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함.

(예)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민영주택 청약 시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순위산정(단 국민주택 청약 시 기존 청약통장가입일을 기준으로 순위산정)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합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 사전청약 및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함.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합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아래와 같이 청약신청 유형별 사용 가능한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람.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				○			

※ 단, APT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유형의 청약신청자는 공동인증서 및 금융인증서만 사용가능함.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5.07.04.(금)입** (청약자격 요건 중 기간, 나이, 지역우선공급 등의 판단기준일)
- 본 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함. 다만 청약신청자 중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김포시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함.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1순위	일반공급 2순위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5.07.14.(월)	25.07.15.(화)	25.07.16.(수)	25.07.23.(수)	25.07.31.(목) ~ 25.08.02.(토)	25.08.04.(월) ~ 25.08.06.(수)
방 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사업주체 견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청약통장 가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C·모바일) 청약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주체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9-4)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사업주체 견본주택 현장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해 인터넷 청약만 가능함.(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되더라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제한 기간 내에 있는 분 및 그 세대에 속한 분도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함.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기타지역(수도권)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음.(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 불가)

■ 2021.02.02.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9항에 의거 국방부 「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분은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함.(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국방부(국군복지단)추천자는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김포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및 별표1 규정에 의거 비규제지역 거래가격이 6억원 이상인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및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 거래대상 주택의 이용계획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함.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수입인지세 납부 관련 안내

- 공급계약 등 부동산거래와 관련된 제세공과금은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아파트 공급계약서(추가선택품목 계약서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인지세법」 제1조제2항에 의거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공급계약 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정부수입인지 형태로 균등 납부할 의무가 있음.

- 분양계약자가 해당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납부, 인지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음.

- 정부수입인지는 취급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세과 (☎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납부세액은 부동산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기재금액) 기준으로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 계약체결 이후 부적격 당첨, 공급질서 교란행위, 통장매매, 위장전입 등의 사유로 계약이 취소될 경우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부를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기재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본 주택의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적용되며 기간은 아래와 같음.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6개월	6개월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김포시 주택과 - 21796호(2025.07.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7번지 일대 (경기도 김포시 풍무 양도지구 도시개발사업 공동주택 1단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3층, 지상 16~29층 8개동 총 866세대 중 일반분양 670세대

[특별공급 367세대(기관추천 67세대, 다자녀가구 67세대, 신혼부부 154세대, 노부모부양 20세대, 생애최초 59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8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2025000271	01	074.8617A	74A	74.8617	25.3447	100.2064	60.1942	160.4006	44.2538	94	9	9	22	3	8	51	43	4
	02	074.9448B	74B	74.9448	25.6504	100.5952	60.2610	160.8562	44.3030	49	5	5	11	2	4	27	22	2
	03	074.7280C	74C	74.7280	25.8821	100.6101	60.0867	160.6968	44.1748	46	5	5	10	2	4	26	20	2
	04	084.7531A	84A	84.7531	28.0364	112.7895	68.1476	180.9371	50.1011	266	27	27	61	8	24	147	119	11
	05	084.6833B	84B	84.6833	28.5856	113.2689	68.0915	181.3604	50.0598	124	12	12	29	3	11	67	57	5
	06	084.9013C	84C	84.9013	28.9066	113.8079	68.2668	182.0747	50.1887	91	9	9	21	2	8	49	42	4
합 계										670	67	67	154	20	59	367	303	28

※ 평형환산법 : 공급면적(m²) ×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특별공급 미 청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경로당 등의 공용면적임.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 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필로티 등으로 세대가 없는 경우 그 위층을 최하층으로 함.

※ 공급면적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 표시 법정단위인 m²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각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므로 면적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방식 등의 차이로 인해 각각의 면적의 합이 연면적이나 계약면적에서 소수점 이하의 오차가 생길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 홈페이지(<http://www.해링턴플레이스풍무.com>)의 동·호 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 신청한 주택형은 추후 다른 주택형으로 변경이 불가함.

※ 동일한 주택형이라 하여도 타입별 세부면적과 해당 동, 라인, 층은 상이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공고 내용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주택형 표시 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074.8617A	074.9448B	074.7280C	084.7531A	084.6833B	084.9013C
약식표기	74A	74B	74C	84A	84B	84C

※ 주택형의 구분은 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공급금액 및 납부 일정

(단위 : 세대, 원)

타입 (약식표기)	공급 세대수	동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5%)	중도금(60%)						잔금(35%)
					대지비	건축비	합계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6회(10%)	입주시
									26.02.27.	26.07.03.	26.12.03.	27.05.03.	27.10.05.	28.03.03.	
74A	94	102동 1호, 3호 108동 1호, 3호	2층	4	205,270,000	429,730,000	635,000,000	31,75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63,500,000	222,250,000
			3층	4	209,795,000	439,205,000	649,000,000	32,45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64,900,000	227,150,000
			4층	4	214,321,000	448,679,000	663,000,000	33,15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66,300,000	232,050,000
			5층	4	218,847,000	458,153,000	677,000,000	33,85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67,700,000	236,950,000
			기준층	78	225,635,000	472,365,000	698,000,000	34,9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69,800,000	244,300,000
74B	49	102동 2호 108동 2호	1층	1	189,753,000	397,247,000	587,000,000	29,35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58,700,000	205,450,000
			2층	2	202,038,000	422,962,000	625,000,000	31,25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62,500,000	218,750,000
			3층	2	206,563,000	432,437,000	639,000,000	31,95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63,900,000	223,650,000
			4층	2	211,089,000	441,911,000	653,000,000	32,65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65,300,000	228,550,000
			5층	2	215,291,000	450,709,000	666,000,000	33,3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66,600,000	233,100,000
			기준층	40	222,079,000	464,921,000	687,000,000	34,35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68,700,000	240,450,000
74C	46	102동 4호 108동 4호	2층	2	200,098,000	418,902,000	619,000,000	30,95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61,900,000	216,650,000
			3층	2	204,624,000	428,376,000	633,000,000	31,65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63,300,000	221,550,000
			4층	2	208,826,000	437,174,000	646,000,000	32,3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64,600,000	226,100,000
			5층	2	213,352,000	446,648,000	660,000,000	33,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66,000,000	231,000,000
			기준층	38	219,817,000	460,183,000	680,000,000	34,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68,000,000	238,000,000
84A	266	101동 1호, 3호 103동 1호, 2호, 4호 105동 1호, 2호, 4호 106동 1호, 3호, 4호 107동 1호, 3호	1층	1	213,028,000	445,972,000	659,000,000	32,95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65,900,000	230,650,000
			2층	11	226,605,000	474,395,000	701,000,000	35,05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45,350,000
			3층	11	231,454,000	484,546,000	716,000,000	35,8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250,600,000
			4층	11	236,626,000	495,374,000	732,000,000	36,6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73,200,000	256,200,000
			5층	11	241,475,000	505,525,000	747,000,000	37,35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74,700,000	261,450,000
			기준층	221	248,910,000	521,090,000	770,000,000	38,5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77,000,000	269,500,000
84B	124	101동 2호 103동 3호 105동 3호 106동 2호 107동 2호	1층	2	209,472,000	438,528,000	648,000,000	32,4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64,800,000	226,800,000
			2층	5	223,050,000	466,950,000	690,000,000	34,5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69,000,000	241,500,000
			3층	5	227,898,000	477,102,000	705,000,000	35,25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70,500,000	246,750,000
			4층	5	232,747,000	487,253,000	720,000,000	36,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72,000,000	252,000,000
			5층	5	237,598,000	497,402,000	735,000,000	36,75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73,500,000	257,250,000
			기준층	102	245,031,000	512,969,000	758,000,000	37,9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75,800,000	265,300,000
84C	91	101동 4호 103동 1호 105동 1호 107동 4호	1층	1	208,180,000	435,820,000	644,000,000	32,2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64,400,000	225,400,000
			2층	4	221,756,000	464,244,000	686,000,000	34,3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68,600,000	240,100,000
			3층	4	226,605,000	474,395,000	701,000,000	35,05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70,100,000	245,350,000
			4층	4	231,454,000	484,546,000	716,000,000	35,8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71,600,000	250,600,000
			5층	4	236,303,000	494,697,000	731,000,000	36,55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73,100,000	255,850,000
			기준층	74	243,739,000	510,261,000	754,000,000	37,7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75,400,000	263,900,000

※ 상기 각 회차별 납입금 납부일이 금융기관 휴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이후 도래하는 최초 은행영업일을 해당 회차의 납부일로 함.

■ 공통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5항에 의거 주택형 표기 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신청 바람.
- 본 아파트는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공동주택)임.
- 상기 공급금액은 각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기 공급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되는 비용과 다를 수 있음.
-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음.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된 것으로 계약 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 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고, 동일 주택형의 해당 세대 주거공용 부분도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사업계획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등의 부득이한 경우 증감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음.(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정산 금액이 없음)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임.(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 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함.
- 공급금액에 계상되지 않았거나 변경되는 토지 관련 조세(종합토지세)는 추후 부과되는 실과세금액을 입주자 잔금 납부 시 납부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요일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해당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본 아파트의 건축 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 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고 감리자의 건축 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음.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고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함.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 사용검사를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음.(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위 단서 조항이 적용되지 않음)
- 중도금 또는 잔금을 납부일자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서의 할인율(선납 당일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할인 됨.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납부한 경우에 선납할인이 적용되며 입주기간에는 선납할인이 적용되지 않음.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 포함)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함.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함.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 또는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입주자 임의시공을 제한함.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으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샷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함.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음.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선홍통 BOX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 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동일 주택형(m²)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발코니 확장구간의 폭 및 깊이가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단위세대 평면은 발코니 확장을 전제로 설계된 것으로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음.

■ 특별공급 공급세대수

구 분(약식표기)		74A	74B	74C	84A	84B	84C	합 계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2	1	1	5	2	2	1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5	2	2	12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1	6	2	1	12	
	중소기업 근로자	2	1	1	5	3	1	13	
	장애인	경기도	1	1	1	2	1	1	7
		서울특별시	1	-	-	2	1	1	5
인천시		1	-	-	2	1	1	5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50%)	5	3	3	14	6	5	36	
	서울특별시 · 인천광역시(50%)	4	2	2	13	6	4	31	
신혼부부 특별공급		22	11	10	61	29	21	15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3	2	2	8	3	2	20	
생애최초 특별공급		8	4	4	24	11	8	59	
합 계		51	27	26	147	67	49	36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2025.03.3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3(특별공급 신청 요건 등에 관한 특례) 개정 사항]

조항	특별공급 신청유형	내용	유의사항
제1항 (배우자의 혼인 전 이력 배제)	신혼부부 생애최초 신생아(공공)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적용횟수 제한 없음
	생애최초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혼인 전 처분완료한 경우에 한함)	
제2항 (혼인특례)	신혼부부	청약신청자가 혼인 전 당첨된 이력에 따른 청약 제한사항(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횟수 제한)이 있더라도 이를 배제하고 청약신청 가능	- 혼인특례는 본인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
제3항 (출산특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신생아(공공)	<p>'24.6.19. 이후 출생한 자녀(태아 또는 '24.6.19. 이후 출생한 사람을 입양한 경우 포함)가 있는 경우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제55조에 따른 특별공급 횟수 제한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 가능</p> <p>→ 이 경우, 특별공급의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에도 불구하고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청약신청 가능</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p>* 기존주택 처분 조건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할 것 - 2.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에 관한 서류(「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3조제4항 각 호)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할 것 - 3.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처분을 완료할 것 </div> <p>→ 이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공공주택 제외) 추천제 청약신청자의 부동산가액 산정 시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액은 합산하지 않음</p>	<p>- 출산특례는 세대 기준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p> <p>- 특별공급 횟수 제한 외 다른 청약 제한 사항은 배제할 수 없음</p> <p>-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p>-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 외의 세대원이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있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출산특례 적용 불가</p>

※ 혼인특례 또는 출산특례를 사용하여 청약하려는 분은 청약신청 시 특례 사용여부를 선택하여야 하며, 청약신청 시 선택한 특례 사용여부는 변경·취소할 수 없음.

- 특례를 사용하여 본 주택의 특별공급 입주자 및 추가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 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명단 관리하며 향후 혼인특례 사용자 본인은 혼인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고, 출산특례 사용자가 속한 세대는 출산특례를 재사용할 수 없음.

- 특례를 사용하지 않아도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될 수 있는 분이 착오에 의해 특례를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특례 사용 사실은 정정될 수 없으며, 특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분이 특례를 사용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당첨이 취소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함.

※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사용하여 청약할 수 없음.

※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분이 공급받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 기존주택 처분 완료함을 증빙하지 못한 경우 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입주가 불가함.

구분	내용																							
공급기준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 및 제55조의3을 적용하는 경우 특별공급 횟수 제한 예외)</p> <p>※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됨.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함.</p>																							
	구분		처리방법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주택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당첨자발표일이 늦은 당첨건은 부적격 처리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	부부가 중복당첨된 경우	접수일시가 빠른 당첨건은 유효하며, 접수일시가 늦은 당첨건은 무효 처리 ※ 분 단위 접수일시가 동일한 경우,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청약신청자의 당첨건이 유효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통장 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p> <p>■ 특별공급 당첨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음.</p> <p>■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원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을 필요로 하는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함.</p>																								
무주택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1. 공통 유의사항” p.2 참조)</p> <p>-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p>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p>																							
청약통장 자격요건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p> <p>- 기관추천(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p> <p>-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p> <p>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p> <p>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p>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93 1270 2141 1437"> <thead> <tr> <th>구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p>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4-1

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해당 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단,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철거주택 소유자(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청약통장 불필요)
추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 중소기업 근로자 :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 ■ 장애인 :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과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해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대상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 기관추천 특별공급 확정대상자 및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분만 신청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특별공급 청약접수일에 청약신청 완료해야 함.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분과 함께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되므로,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4-2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67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가능 함. ■ 만19세 미만의 자녀 2명 이상(태아, 입양자녀 포함)이 있는 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상 미성년자를 말하며, 자녀가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함.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배점 → ③미성년 자녀수 → ④청약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분 → ⑤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 기타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단, 해당 시·도에서 경쟁 발생시 해당주택건설지역(김포시) 거주자 우선 선정함] ※ 경기도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시 및 인천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경기도 거주 신청자에게 우선공급 요건은 적용되지 않음 ■ ②배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margin-top: 10px;"> <thead> <tr> <th rowspan="2">배점항목</th> <th rowspan="2">총배점</th> <th colspan="2">배점기준</th> <th rowspan="2">비고</th> </tr> <tr> <th>기준</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계</td> <td>100</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배점항목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4명 이상	40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3명	35	
			2명	25	
	영유아 자녀수(2)	15	3명 이상	1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영유아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2명	10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 청약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분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신청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	
<p>※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p> <p>(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p> <p>(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순위확인서로 확인</p>					

4-3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3% 범위 : 154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한 분

<p>당첨자 선정방법</p>	<p>■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순위 →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p>																			
	<p>■ ①소득구분</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소득구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신생아 우선공급 (25%)</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2단계</td> <td>신생아 일반공급 (10%)</td> <td>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3단계</td> <td>우선공급 (25%)</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td> </tr> <tr> <td>4단계</td> <td>일반공급 (10%)</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td> </tr> <tr> <td>5단계</td> <td>추첨공급</td> <td>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td> </tr> </tbody> </table>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p> <p>※ 1단계 및 2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②순위를 고려하지 않고 ③지역 → ④미성년 자녀수 → ⑤추첨의 순서에 따라 선정</p> <p>※ 5단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순위와 관계없이 김포시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p>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2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3단계	우선공급 (2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00% 이하여야 함)																	
	4단계	일반공급 (10%)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 초과 140% 이하인 분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단 부부 중 1인의 소득은 140% 이하여야 함)																	
	5단계	추첨공급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40% 초과하나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p>■ ②순위</p>																			
<table border="1"> <thead> <tr> <th>순위</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순위</td> <td>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td> </tr> <tr> <td>2순위</td> <td>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td> </tr> </tbody> </table>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순위	내용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하여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분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분																			
<p>■ ③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p>																				
<p>비고</p>	<p>■ 자녀기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는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를 포함 * 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 - (②순위 판단 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출산(태아, 입양자녀 포함)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1순위 신청가능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전혼자녀(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 또는 재혼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④미성년 자녀수 판단 시) 재혼인 경우 재혼 배우자의 전혼자녀(재혼 배우자가 이전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0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이하	~7,205,312원	~8,578,088원	~9,031,048원	~9,733,086원	~10,435,124원	~11,137,162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20% 이하	~8,646,374원	~10,293,706원	~10,837,258원	~11,679,703원	~12,522,149원	~13,364,594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00% 초과 140% 이하	7,205,313원~ 10,087,437원	8,578,089원~ 12,009,323원	9,031,049원~ 12,643,467원	9,733,087원~ 13,626,320원	10,435,125원~ 14,609,174원	11,137,163원~ 15,592,027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초과 160% 이하	8,646,375원~ 11,528,499원	10,293,707원~ 13,724,941원	10,837,259원~ 14,449,677원	11,679,704원~ 15,572,938원	12,522,150원~ 16,696,198원	13,364,595원~ 17,819,459원
추첨공급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는 경우	14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0,087,438원~	12,009,324원~	12,643,468원~	13,626,321원~	14,609,175원~	15,592,028원~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 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 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 처리 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내용												
구분	금액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p>-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p> <table border="1"> <thead> <tr> <th colspan="2">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주택</td>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주택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p>-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p>-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p>													

4-4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0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한 분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 :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가점제 적용기준)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기준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며, 청약가점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부적격 당첨 처리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청약신청자에게 있음. - 가점 산정기준 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 colspan="2">가점구분</th> <th>점수</th> <th colspan="2">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4">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4">32</td> <td colspan="2">만30세 미만 미혼자</td> <td>0</td> <td colspan="2">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 colspan="2">1년 미만</td> <td>2</td> <td colspan="2">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 colspan="2">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 colspan="2">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 colspan="2">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 colspan="2">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body> </table>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p>※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산정 시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하지 않음.</p> <p>■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비고	<p>■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p> <p>-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p> <p>■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p>					

4-5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9% 범위 : 59세대

구분	내용
대상자	<p>■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p> <p>■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분</p> <p>- 모든 세대구성원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함.</p> <p>※ (예외)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3에 따라 청약신청자의 배우자가 혼인 전 주택을 소유하였다가 혼인 전 처분한 이력은 배제함</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분</p> <p>-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p> <p>■ 아래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분</p> <p>- 가.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태아, 입양자녀 포함, 청약신청자가 혼인 중이 아닌 경우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가 있는 분</p> <p>- 나. 1인 가구(혼인 중이 아니면서 미혼인 자녀도 없는 분)</p>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가능하며, '단독세대'와 '단독세대가 아닌 분'으로 구분됨.
- * '단독세대'란, 단독세대주이거나, 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분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하며,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신청가능함.(본 공고는 60㎡이하 주택형이 없으므로, 1인가구 중 단독세대인 분은 생애최초 청약 불가)
- * '단독세대가 아닌 분'이란, 직계존속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함.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 * 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분을 포함
 - **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당첨자 선정방법

- **당첨자 선정 순서** : ①소득구분 → ②지역 → ③추첨
- **①소득구분**

단계	소득구분	내용	
1단계	신생아 우선공급 (1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2단계	신생아 일반공급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을 포함한다)의 자녀가 있는 분으로서,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3단계	우선공급 (3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인 분	
4단계	일반공급 (15%)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30% 초과 160% 이하인 분	
5단계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1인 가구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이거나,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인 분

※ 각 단계별 낙첨자는 다음 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나, 2단계 신청자 중 낙첨자는 3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4단계 공급대상에 포함됨.

- **②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비고

- **자녀기준**
 - (임신·입양) 입주 시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 임신,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으로 판단
 - *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기간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확인
 - * 입양의 경우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

- **소득기준**

- 소득 확인 시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시점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시점
2025.07.04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해당 세대의) 전년도 소득

- 2024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소득구분	비율	소득금액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생아우선공급, 우선공급	130% 이하	~9,366,906원	~11,151,514원	~11,740,362원	~12,653,012원	~13,565,661원	~14,478,311원	
신생아일반공급, 일반공급	130% 초과 160% 이하	9,366,907원~ 11,528,499원	11,151,515원~ 13,724,941원	11,740,363원~ 14,449,677원	12,653,013원~ 15,572,938원	13,565,662원~ 16,696,198원	14,478,312원~ 17,819,459원	
추첨공급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1인 가구	160% 이하	~11,528,499원	~13,724,941원	~14,449,677원	~15,572,938원	~16,696,198원	~17,819,459원
		160%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충족	11,528,500원~	13,724,942원~	14,449,678원~	15,572,939원~	16,696,199원~	17,819,460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702,038) x (N-8)}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원수 산정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인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포함
- ※ (월평균 소득산정 대상) 가구원수에 포함되는 가구원 중 만19세 이상인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 포함). 단, 세대원의 실종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 ※ (월평균소득) 소득산정 대상자별 월평균소득을 합산한 금액.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 및 소득금액증명상의 지급받은 총액(수입금액)을 근로기간(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으로 나누어 산정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소득금액을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으로 나누어 산정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를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자산기준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자산보유기준**

구분	금액	내용	
부동산 (건물+토지)	3억3,100만원 이하	건축물	- 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토지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대장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 -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 기준)

구분	내용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분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 순위별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분 																																																					
청약통장 자격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예치금액 이상인 분(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한함)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 - 2순위 : 예치금액과 관계없이 청약예금·청약부금·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분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data-bbox="291 518 2128 686"> <thead> <tr> <th>구 분</th> <th>특별시 및 부산광역시</th> <th>그 밖의 광역시</th> <th>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d>2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d>3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d>500만원</td> </tr> </tbody> </table> <p>※ '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따른 거주지역을 말함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가능함</p>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구 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당첨자 선정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선정 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가점제 : ①지역 → ②가점 → ③청약통장 가입기간 → ④추첨 - 1순위 추첨제 : ①지역 → ②무주택자 우선공급 → ③추첨 - 2순위 : ①지역 → ②추첨 ■ ①지역 : 해당지역 거주자(김포시 거주자) → 기타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 ■ ②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별 1순위 가점제/추첨제 적용비율 <table border="1" data-bbox="291 1029 2128 1133"> <thead> <tr> <th>구분</th> <th>가점제</th> <th>추첨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60㎡ 이하</td> <td>40%</td> <td>60%</td> </tr> <tr> <td>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td> <td>40%</td> <td>60%</td> </tr> </tbody> </table> - 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 <table border="1" data-bbox="291 1189 2128 1508"> <thead> <tr> <th>가점항목</th> <th>가점상한</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h>가점구분</th> <th>점수</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8">①무주택기간</td> <td rowspan="8">32</td> <td>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td> <td>0</td> <td>8년 이상 ~ 9년 미만</td> <td>18</td> </tr> <tr> <td>1년 미만</td> <td>2</td> <td>9년 이상 ~ 10년 미만</td> <td>20</td> </tr> <tr> <td>1년 이상 ~ 2년 미만</td> <td>4</td> <td>10년 이상 ~ 11년 미만</td> <td>22</td> </tr> <tr> <td>2년 이상 ~ 3년 미만</td> <td>6</td> <td>11년 이상 ~ 12년 미만</td> <td>24</td> </tr> <tr> <td>3년 이상 ~ 4년 미만</td> <td>8</td> <td>12년 이상 ~ 13년 미만</td> <td>26</td> </tr> <tr> <td>4년 이상 ~ 5년 미만</td> <td>10</td> <td>13년 이상 ~ 14년 미만</td> <td>28</td> </tr> <tr> <td>5년 이상 ~ 6년 미만</td> <td>12</td> <td>14년 이상 ~ 15년 미만</td> <td>30</td> </tr> <tr> <td>6년 이상 ~ 7년 미만</td> <td>14</td> <td>15년 이상</td> <td>32</td> </tr> <tr> <td>7년 이상 ~ 8년 미만</td> <td>16</td> <td></td> <td></td> </tr> </tbody> </table>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구분	가점제	추첨제																																																				
전용면적 60㎡ 이하	40%	60%																																																				
전용면적 60㎡ 초과 85㎡ 이하	40%	60%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청약신청자 본인 제외)	35		0명	5	4명	25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본인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배우자	배우자 없음 또는 배우자 통장미가입	0	1년 이상 ~ 2년 미만	2	
1년 미만		1	2년 이상	3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에 따라 가점제 청약 시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에 배우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음.

- 배우자의 통장가입기간 점수표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50% 적용)	점수
1년 미만	6개월 미만	1점
1년 이상 ~ 2년 미만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점
2년 이상	1년 이상	3점

-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전체 가입기간의 50%에 해당하는 기간의 점수로 계산하며, 그 점수가 3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3점까지만 인정

- 본인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와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 합산 시 17점을 초과하는 경우 최대 17점까지만 인정

- 청약 전 반드시 배우자 본인이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를 발급하여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확인해야 하며, 향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시 배우자의 순위확인서 및 배우자의 당첨사실 확인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 적격함을 증빙해야 함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 당첨사실 확인서 발급 :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의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으나, 순위확인서 발급 전 배우자의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순위확인서 발급이 불가하므로 적격증빙을 위하여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전까지 배우자의 청약통장 유지 필요

- 가점제 적용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9호 각 목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름.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함.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

	<p>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p> <p>4)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2)가족관계증명서, (3)혼인관계증명서(만30세 이전에 혼인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4)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의미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양'의 의미는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을 의미함.</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p> <p>3) 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손자녀 포함)는 미혼으로 한정 - 주택공급신청자의 만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 - 재혼배우자의 자녀는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봄</p> <p>4)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인 직계비속과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음. - (만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만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5) 확인방법: (1)주민등록표등본, (2)가족관계증명서, (3)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초본</p>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름</p>												
<p>■ ② 무주택자 우선공급 :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p>													
<table border="1"> <thead> <tr> <th>단계</th> <th>비율</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1단계</td> <td>추첨제 물량의 75%</td> <td>무주택세대구성원</td> </tr> <tr> <td>2단계</td> <td>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td> </tr> <tr> <td>3단계</td> <td>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td> <td>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td> </tr> </tbody> </table>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단계	비율	내용											
1단계	추첨제 물량의 75%	무주택세대구성원											
2단계	1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											
3단계	2단계 공급 후 잔여물량	1순위에 해당하는 분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분											
<p>■ ③ 청약통장 가입기간 : 가입기간은 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함.</p> <p>-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함.</p> <p>* 단, 청약저축에서 종합저축으로 전환한 경우 전환개설한 날을 기준으로 함.</p>													
<p>비고</p>	<p>■ 1순위 가점제 청약 시 유의사항</p> <p>-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분 및 그 세대원은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처리됨.</p> <p>- 1순위 가점제 당첨 시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어,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의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함.</p>												

■ 신청일정 및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5.07.14.(월) (청약Home 인터넷 : 09:00~17:30) (건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해링턴플레이스 풍무 건본주택 -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9-4
일반공급	1순위	2025.07.15.(화) 09:00~17: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2순위	2025.07.16.(수) 09:00~17:30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신청유형 및 주택명 선택 → 청약자격 등 입력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현장접수, 정보취약계층에 한함)

- 현장접수 시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접수를 받으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함.

- 특별공급 : 특별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10:00~14:00 사업주체 건본주택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함.

- 일반공급 : 일반공급 청약신청일 당일 09:00~16:00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을 통하여 신청가능함.

* 단, 은행 영업점별 업무 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신 후 방문하시기 바람.

- 일반공급 현장접수 시 필요서류

필요서류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서류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h4>인감증명 방식</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서는 제출 생략) 	<h4>본인서명확인 방식</h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

-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해야 함.
- ※ 주택공급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신청내용을 확인해야 하며,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해야 함.
-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p>마이데이터 (‘청약도움e’)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신청 단계에서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등 행정정보를 수신하여 세대주 여부 및 해당지역 거주기간 등 청약신청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드리는 서비스임. - 서비스 이용은 선택사항이며,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 및 연계 기관(정보 보유기관)의 상황 등에 따라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이용방법 : 청약신청 → APT → 청약홈 마이데이터(‘청약도움e’) 서비스 팝업 → 본인정보 제3자 제공 요구 				
<p>공고단지 청약연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함.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이용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p>당첨자발표 서비스</p>	<table border="1"> <tr> <td data-bbox="295 922 504 1204"> <p>청약홈</p> </td> <td data-bbox="504 922 2172 120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23.(수) ~ 2025.08.0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음. </td> </tr> <tr> <td data-bbox="295 1204 504 1410"> <p>문자</p> </td> <td data-bbox="504 1204 2172 14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7.2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td> </tr> </table>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23.(수) ~ 2025.08.0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음.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7.2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p>청약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5.07.23.(수) ~ 2025.08.01.(금) (10일간) - 조회기간(10일)이 경과하더라도 ①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②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 현장접수자의 경우 인증서 로그인 없이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만으로 당첨내역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PC·모바일 신청자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음. 				
<p>문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공일시 : 2025.07.23.(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람.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사전서류제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2025.07.23.(수)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https://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조회 * 사용 가능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7.31.(목)~2025.08.02.(토)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장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9-4) ※ 자격확인 서류 제출방법은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별도 통보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5.08.04.(월)~2025.08.06.(수) (10:00~16:00) •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사 견본주택 (장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9-4)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견본주택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자격검증서류 제출 시 홈페이지(<http://www.해링턴플레이스풍무.com>) 안내 예정이며, 자격검증서류 제출 일정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람.
- 예비입주자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검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비입주자 서류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동·호수 배정 추첨참여 및 계약진행이 불가할 수 있음.
- 모든 제출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5.07.04.) 이후 발급분에 한하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제출하신 서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4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 접수일로부터 6개월간,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5년 동안 보관 후 지체없이 파기처리 함.
- 계약 이후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경우에도 당첨자(예비입주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됨.
- 관계 법령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문에 표기된 서류 외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소명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임.
- 위변조된 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주택법」제65조(공급질서 교란) 위반으로 최대 10년의 범위에서 입주자격이 제한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음.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특별공급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제출서류(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자는 청약신청 시에 제출하며, 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에 한해 당첨자 발표일 이후 서류 제출 기간에 제출)

■ 당첨자(예비입주자) 자격확인 구비서류 [공통서류와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및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당첨자 자격요건 서약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본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본인 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함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제3자 대리신청 및 대리 계약은 불가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조회 기간 : 본인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전체 포함)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	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 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10년 이상)을 명시 • 해당지역 외 지역에 거주하는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해당지역으로 당첨된 경우 → 군복무기간(25년 이상)을 명시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기관의 추천서 또는 인정서	본인	• 해당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 /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장애인 특별공급의 경우 필히 해당 지자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인정함, 국가유공자는 보훈관리명단으로 접수함
다자녀 특별공급	○		다자녀 배점 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주민등록표등본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요망)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전혼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여성가족부의 「 한부모가족 지원법 」에 따라 한부모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된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자녀	• 만18세의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신혼부부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건본주택 비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전혼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 이전 자녀 출산 시(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건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건물(주택포함)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성년자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가점 산정 기준표	본인	• 건본주택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년이상의 주소변동사항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피부양 직계비속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주소변동사항(1년 이상 인정받고자하는 기간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출입국사실증명서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 (* 주민번호 전체,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생애최초 자격요건 확인서	본인	• 소득산정대상의 소득 및 자산요건 작성(견본주택 비치)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분리된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상 등재된 배우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 필수(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소득증빙서류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소득증빙서류)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비속	•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배우자가 없는 경우)이 동일 등분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포함)	피부양 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전체포함"으로 발급)
	○	부동산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발급기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소유 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	부동산 건물(주택포함) 및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이 확인 될 경우 제출
○	부동산 가격 증명 서류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부동산 소유현황 조회 결과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세대원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공시가격 제출 ※ 부동산 가격조회 참고자료 - 토지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개별공시지가 조회 후 해당 토지면적을 곱하여 산출 - 공동주택/단독주택 : 국토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 공동주택가격 열람 / 단독주택가격 열람 - 기타 건축물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	해당 부동산 등기부등본 및 재산세 납부내역	본인 및 성년자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는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담당의사명, 의사면허번호 기재되어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 임신중인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입양의 경우	

기존주택 처분조건 당첨자	○	기존주택 처분관련 서약서	본인	• 건분주택 비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서약서(별지 제6호 서식)
전세피해자 제출서류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임대차계약서, 낙찰 증명서류(경매 : 매각허가결정, 공매 : 매각결정통지서 등) • 등기사항증명서(임차주택), 임차주택 경.공매에서 채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매 : 배당표, 배당요구신청서 등 / 공매 : 배분계산서 등)
해외근로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체류 증빙서류	본인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건강보험자격실확인서, 재직증명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공급 (가점제당첨자 및 가점제 예비입주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경우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생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자격확인 > 청약통장 > 순위확인서 발급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 청약하고자 하는 주택명 선택 (청약통장 가입은행) 창구 방문 >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발급
	○	당첨사실 확인서		•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신청자 중 배우자의 청약통장가입기간 점수를 산입(1~3점)한 경우, 아래 경로를 통해 서류 발급 * (청약홈) 청약홈 > 청약소통방 > APT당첨사실 조회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의 내역)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만18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전체 포함)		• 만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진료개시일, 요양기관명 및 요양기관 연락처에 한정) - 당첨자의 30세 이상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모집공고일 기준 과거 1년간의 내역)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기록대조일 :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설정, 출입국 기록출력 여부 "Y" 설정 발급)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서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청약자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접수 장소에 비치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건분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서명서류	해당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계약체결 전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출산휴가 또는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출산휴가 또는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본)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또는 총 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①,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①,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전년도 소득금액증명 (원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② 세무서
	신규사업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국민연금공단 ② 세무서
	법인대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② 전년도 재무제표(원본)및 원천징수이행명세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④ 사업자등록증명원 사본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원본)	①,②,③ 해당직장 ④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위촉증명서 및 해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 미인정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건본주택에 비치)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출 ②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원(신고 소득사실 없음)	① 건본주택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택스

※ 군복무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의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부부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 ※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 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상기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모든 발급 서류는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포함하여 발급
 -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에는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이며, 상기 제출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 ※ 상기 서류 외 당첨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에서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음.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증빙 제출서류

해당자격		소득세 납부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직장/세무서(홈텍스)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5개년도 각각의 증빙서류) ① 소득금액증명 ② 납부내역증명, 납세증명서(종합소득세 신고자에 한함)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0 또는 (-)인 경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납부계산서 추가 ③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④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 증명	①,② 세무서(홈텍스) ③,④ 해당직장 / 세무서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산입증서류(추첨제 소득기준 초과 신청자에 한함)

해당자격	자산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부동산소유현황' 이 있는 경우	필수	① 부동산소유현황 (세대원별 각각 발급) -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 ② 건물(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부동산소유현황에 표시된 해당 부동산 모두에 대한 서류 발급) ③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해당 부동산의 재산세 납부내역을 입증하는 서류)	①,② 등기소(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포함) ③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자	① 공동(개별)주택가격 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인 경우) ②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소유 부동산이 토지이거나 단독·공동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인 경우) ③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 (소유 부동산이 건축물대장상 주택 외 건축물인 경우) (서울시 : 'ETAX이용안내 > 조회/발급 > 주택외건축물시가표준액조회'에서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서울시 외 : '위택스 > 지방세정보 > 시가표준액 조회' 에서 건축물시가표준액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①,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③ 서울시이택스, 위택스
	추가 해당자	• 농지대장, 축산업 허가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농지법» 및 «초지법» 등에 따라 토지가액에서 제외되는 경우)	해당 행정복지센터, 해당 축산과, 토지이음
'부동산소유현황' 이 없는 경우	필수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 등기열람/발급 > 부동산 > "부동산 소유 현황" 조회결과를 인쇄하여 제출 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전국구 ※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국통합발급요청)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② 해당 행정복지센터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 청약하고 자산기준 충족을 입증해야 하는 주택공급신청자는 상기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 상기 자산입증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주택공급신청자 및 세대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포함) 전원의 자산입증서류를 포함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처리일 <ol style="list-style-type: none">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p>*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p>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관리대장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table border="1" data-bbox="291 1141 2105 1324"> <thead> <tr> <th>조항</th> <th>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th> <th>주거전용면적</th> <th>수도권</th> <th>비수도권</th> </tr> </thead> <tbody> <tr> <td>제53조제9호가목</td> <td>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td> <td>60㎡ 이하</td> <td>1억 6천만원</td> <td>1억원</td> </tr> <tr> <td rowspan="3">제53조제9호나목</td> <td>단독주택</td> <td rowspan="3">85㎡ 이하</td> <td rowspan="3">5억원</td> <td rowspan="3">3억원</td> </tr> <tr> <td>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td> </tr> <tr> <td>도시형 생활주택</td> </tr> </tbody> </table> <ol style="list-style-type: none">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8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

■ 계약기간 및 계약금 납부안내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공급대금 계좌로 계약금 납부하고 필수 구비사항과 해당 추가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구분	계약일정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5.08.04.(월) ~ 2025.08.06.(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369-4, 해링턴플레이스 풍무 건본주택

-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세대가 있을 경우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분양함.
-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함.
-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일반공급) 동·호수 추첨 및 계약일정은 추후 별도 개별안내 예정임.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분양 대금	우리은행	1005-104-734617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입금시 동·호수, 계약자명 필히 기재요망

-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 상기의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람.(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람)
-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람.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구비사항		해당서류	발급기준	구비서류
	필수	추가(해당자)			
당첨자 본인 계약 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전자 인감증명서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이후 신규 발급본인 경우 여권정보증명서로 발급)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실거래신고서 및 주택취득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건본주택 비치(아파트 공급대금과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의 합계액과 일치)
	○	○	추가 개별통지서류 계약금 입금증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통지)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자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인 계약 위임시 (본인 외 모두 3자로 간주)	○		위임장	계약자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건본주택 비치)
	○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계약자	• 용도 : 아파트 위임용
	○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대리인	• 대리인 개인정보수집 (건본주택 비치)
	○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
-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여부,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 본인의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 [서명]으로 계약을 체결하려 하는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하여야 하며,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는 정자체로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서명]을 직접 기재하여야 함(대리접수 불가)
- ※ 계약 체결 시 계약자 본인이 방문하지 않는 경우, 제3자대리계약(본인 외에는 모두 제3자) 추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 인감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외국국적동포 또는 외국인인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로 제출하여야 함.

■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본 아파트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함.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됨.
- 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도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제24호의 규정에 해당할 경우 당첨이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은 가능하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2022.12.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부정 당첨자로 관리함.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을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되며,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및 부정 당첨자로 관리가 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김포시 및 수도권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주민등록 위장 전입자가 본 아파트에 공급 신청하여 당첨된 자는 공급계약이 취소되고, 관련법규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속도/탑승위치 등)등은 최종 사업계획(변경포함)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일체의 이익을 제기 할 수 없음.

- 건본주택에 설치된 유니트 및 단지내 모형 및 홍보물 일체(POP, 이미지외)는 소비자(분양자외)의 이해를 돕기위한 것으로 실제 설치.시공시 달라질 수 있음.
- 분양권 전매 요청시 당해주택의 사업주체 및 대출취급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취급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 될 수 있음.
- 각종 인쇄물 및 홍보물상의 조감도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및 건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람.
- 기타 계약조건은 공급계약서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주택의 공급계약)에 준함.
- 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사업주체와 공동으로 하여야 하며, 따라서 부동산 거래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업주체에서 일괄 신고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람.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 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 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음.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과 관련법에 따름.

■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여부 확인

- 주택의 공급계약이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 체결 이전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아래 계약 시 구비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상기 기간 내에 서류심사를 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약 체결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당첨 및 계약 취소, 당첨일로부터 6개월간 당첨 제한 등)됨을 유념하시고, 계약체결 전 기간 내에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관련 서류 제출 및 계약체결 자격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람.
- 각 순위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이중당첨 및 부적격 당첨자의 계약시 아파트 공급계약을 취소 할 수 있음.
-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부적격자는 사업 주체로부터 부적격 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7일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함)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이에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람.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 금융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사업주체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건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이며, 계약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나 관련정책 및 대출상품의 종류 개인의 사정 등으로 대출한도가 계약자 별로 상이하거나 대출이 불가할 수도 있으므로 지정한 대출취급기관에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본 아파트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부정책, 대출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음.(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적격대출시 중도금 대출이자와 관련하여서는 **중도금 이자후불제**를 적용하며, 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따라 중도금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직전 이자납부일까지는 사업주체가 계약자를 대신하여 납부하고, 이후 발생하는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기로 함. 또한, 계약자가 잔금 납부시 사업주체가 대신하여 납부한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대출이자를 사업주체에게 지급하여야 입주가 가능하며, 입주지정기간 내 미납시에는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함.
-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함. 이 경우, 이자후불제 조건에 대한 요구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할 수 없음.
-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금융기관에 중도금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 등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분양대금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람.
- 적격대출 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 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총 분양대금의 5%)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함.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사업주체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은행과 중도금 대출 약정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함.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함.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 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함.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 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특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행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자가 대납하던 중도금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함.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안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음.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은행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 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 조건 등은 대출은행의 조건에 따르기로 함.
- 중도금 및 잔금의 선납할인을 및 연체이자는 공급계약서를 기준으로 함.
- 분양권 전매 요청 시 사업주체 및 대출 취급 기관은 양수인의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 증빙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 취급 기관 또는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양수인이 신용등급 등의 제반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될 수 있음.

■ 입주예정일 : 2028년 0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 예정)

- 2021.02.02.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로부터 1개월 전에 실제 입주가 가능한날을 계약자에게 통보할 예정임.
- 입주지정기간은 최소 60일이상 제공될 예정이며, 실제 입주일이 입주 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된 중도금과 잔금을 실제 입주지정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음.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입주 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함.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입주자 사전방문에 관한 사항

- 사전방문을 주택공급 계약에 따라 정한 입주지정기간 시작일 45일전까지 2일 이상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통보하고, 실제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1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주택공급의 계약자에게 각각 통보할 예정임.
- 사전점검 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스테디룸, 작은도서관, 주민공동시설(피트니스, 실내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 샤워실), 키즈그라운드, 어린이놀이터,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 주민운동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 맘스스테이션 등
 ※ 시설내 운동기구 및 집기류, 가구, 도서 등은 실제 시공시 수량 및 종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입주자의 부담으로 진행 예정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에 의거 적용됨.
- 하자판정 기준도면은 준공도서를 기준으로 함.

9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계약

■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약식표기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비고
		계약시	입주시	
74A · 74B · 74C	21,000,000	2,100,000	18,900,000	신청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
84A · 84B · 84C	26,000,000	2,600,000	23,400,000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 공사비	우리은행	1005-204-752210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 지정된 발코니 확장 공사비 (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음.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이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발코니 확장시 유의사항

- 「건축법시행령」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으며, 발코니확장은 세대별로 계약하는 별도 계약품목으로 공동주택 분양가에는 미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시 진행할 예정이며, 발코니확장 공사비 납부계좌와 분양대금 납부계좌가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 후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형 선택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평면구성 및 제품품목이 변경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고 실별, 위치별로 선택시공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된 금액으로 추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관련세금(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분양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함.
- 발코니 확장 시 또는 유상옵션 시 제공되는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주택형별 확장위치 및 마감재 등 세부사항은 분양홍보물 또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본공사 시 색상이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발코니의 면적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산출되는 면적으로 실사용 면적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위세대는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상부세대가 비확장형인 경우 커튼박스의 깊이가 모델하우스와 상이하게 설치될 수 있음.(단열재 설치로 인하여 커튼박스의 깊이 축소됨)
- 단위세대 빌트인가전 및 일부 마감재가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가구류는 확장 또는 비확장형 여부에 따라 설치 위치, 수량 및 디자인이 상이하오니 사전에 확인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품목, 유상옵션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있고, 본 시공 시에는 계약내용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유상옵션 품목(설치사항, 규격), 견본주택의 연출용(전시품목 등) 및 공간 확보(주방, 가전제품 사용공간 등) 부분 등에 대해 계약자는 사전에 견본주택을 충분히 확인한 다음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커튼, 침대, 소파, 책상, 식탁, 전시조명 등),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TV 등), 기타 전시용품 등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출용으로 입주 시 제공되지 않으며(분양가 미포함),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은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가전제품(냉장고, 세탁기 등 일체)의 용량 및 규격에 따라 세대내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고, 계약 및 입주 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분양승인 시 제출하는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기본 마감재 이외에 유상옵션 품목과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용품이 포함된 VR 동영상이므로 제공품목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제공되는 발코니 외부샤시는 타입, 창호 위치에 따라 규격이 상이하므로 견본주택 및 비치된 도면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조명기구 및 배전기구의 타입,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발코니확장 선택 시 확장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여건에 따라 발코니 샤시 및 유리창표면에 결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야 함.(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의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
- 당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하향식피난구 또는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확인 후 설치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 등은 입주시점에 아파트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부담 하여야 함.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는 관련 법령에 맞게 시공되어야 하며,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음.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행자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고,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

- 발코니에는 각 세대의 가스배관 및 발코니에 필요 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시공되며, 발코니 확장 선택 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조잡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가 설치된 공간의 출입문은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발코니 확장 창호는 성능 및 안전 개선 등으로 창호의 형태, 형식, 크기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임.
- 확장되지 아니하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발코니 새시 설치 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이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수전이 설치되는 비확장 발코니를 제외하고 발코니 확장을 고려하여 별도의 배수설비 및 수전은 시공하지 않고, 배수구 위치 및 배수/우수 입상관 위치는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고,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할 수 없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경우 발코니 천정에 덕트 및 연도, 배관 등이 노출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환기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하부 바닥 배관으로 인한 턱이 형성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부세대가 발코니 비확장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정 및 커튼박스의 깊이,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벽·천장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비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나 결로가 발생할 수 있고, 일부 벽체·천장 마감재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음.
- 확장범위는 확장형 단위세대 평면도를 기준으로 하며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함.

■ 추가 선택 품목(유상옵션)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일부는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선택 가능한 품목임.

※ 추가 선택품목 계약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납부금액 및 시기는 변동될 수 있음.(정확한 일자 는 추후 통보함)

1)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은 발코니확장옵션 선택 시 설치가능하며 설치위치는 해당 실내에서 다소 조정될 수 있으며,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은 시공 상의 이유로 에어컨 공사시점에 선정된 모델로 설치됨. (단위 : 원, VAT포함)

약식표기	설치개소	설치위치	공급금액	비고(제조사명)
74A · 74B · 74C	2개소	거실+침실1	3,250,000	삼성
	4개소	거실+침실1+침실2+침실3	5,960,000	
84A · 84B · 84C	3개소	거실+주방+침실1	3,970,000	
	5개소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180,000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자가 옵션선택 완료 후 임의로 에어컨 및 실외기를 추가 설치하여 냉방기능 등에 장애가 발생하는 것에 관해서는 하자를 제기할 수 없음.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기간 또는 사업주체가 별도 지정한 기간 내 시스템에어컨 계약을 체결할 예정임.
- 시스템에어컨 설치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지정을 할 수 없음.
- 시스템에어컨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과는 별도 계약사항이며, 계약 후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거나 별도품목 상품을 제작업체에 주문 또는 발주한 이후에는 계약의 변경 및 해제

또는 취소가 불가하므로 이점 유념하시어 계약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편의상 냉난방용으로 설치하였으며, 본 공사시 적용될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으로 난방기능이 없음.
- 시스템에어컨 옵션비용은 에어컨 설치금액에서 미옵션시 적용되는 매립배관 시공비를 제외한 금액임.
- 에어컨 냉매배관(매립)은 침실1(벽걸이형), 거실(스탠드형)만 기본으로 설치되며, 추후 실내외기 설치 및 연결공사는 입주자 부담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실외기실에 설치되는 냉매배관은 타입별 본 현장 여건에 맞게 설치되며 본 내용에 대해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실외기실에는 실외기 1대 설치만 가능하며, 옵션 미선택 후 별도 설치를 위해 실외기 2대 설치가 불가능함을 인지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입주자 부담으로 에어컨 관련 일체의 공사를 별도로 시공하여야 함.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실외기의 성능향상 및 미관개선 등을 위하여 발코니 턱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각 호수 별로 시스템 에어컨 실내기 위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발코니 변화층의 경우 발코니 변화 세대간 조건에 따라 일부세대에는 천장 단열재가 반영되어 실내기의 설치위치가 변경 될 수 있음), 시스템 에어컨의 위치변경으로 거실 우물천장의 모양도 상이할 수 있음.(관련 동/호수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시 에어컨 루버와 입주자가 설치하는 실외기간의 높이 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외기 받침대의 설치는 입주자 공사분임.
- 시스템에어컨 선택옵션에 따라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임.
-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천장형 에어컨 냉매배관 및 드레인 설치되지 않음.

2) 가전제품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약식표기	설치품목	제조사명	모델번호	공급금액	비고
주방	74A	빌트인 냉장고(냉장/냉동/김치냉장고)+ 냉장고장	삼성	냉장 : RR40C78(9)95AP 냉동 : RZ34C78(9)65AP 김치냉장고 : RQ34C78(9)AP	7,260,000	냉장고 패널 : 글라스 냉장고 불박이장, 유리키큰장 포함
	74B				6,170,000	
	74C				6,880,000	
	84A				7,310,000	
	84B · 84C				6,910,000	
	전타입	식기세척기	삼성	DW80F71Y1SEW	940,000	-
	전타입	독립형렌지후드	힘펠	RHD1-C350SL_IE	450,000	-
전타입	인덕션(3구)	쿠쿠전자	CIRS-FL301FB-S	500,000	-	
욕실	전타입	다가능 복합환풍기	그렉스	BD-150A(3S)	720,000	부부, 공용욕실 2개소 설치

- 주방 냉장고장 옵션 선택에 따라 수납장의 구성이 변경되며, 형태 및 규격은 타입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한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기본 냉장고장 구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람.
- 냉장고 패키지는 문열림 방향은 견본주택 기준으로 설치되며, 임의로 선택 하실 수 없음.
- 식기세척기 미선택시 수납장이 설치됨.
- 가전제품을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는 경우는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만, 추가선택품목으로 선택하지 않는 경우 가전제품 별 전기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냉장고 상부장은 타입별로 크기가 상이하며, 용량에 따라 가전제품 배치가 불가할수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될 수 있음.

3) 현관중문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타입)	공급금액	비고
현관중문	현관 중문 (3연동)	74A · 74B · 74C	1,350,000	-
		84A · 84B · 84C	1,310,000	

- 현관중문은 장식성 도어로 차음, 단열을 위한 기능성도어가 아니며 중문과 가구 및 벽채, 문짝과 문짝 사이에 이격이 있을 수 있음.
- 평면 형태에 따라 중문 형태 및 크기가 상이하며 본공사시 프레임 및 창호 부속물 등의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4) 가구 및 마감재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	공급금액	비고
바닥	광폭강마루 (W:165mm)	74A	370,000	전실 광폭 강마루 적용 (침실/거실/주방)
		74B	350,000	
		74C	370,000	
		84A	410,000	
		84B	390,000	
		84C	420,000	
조명 업그레이드	주방 특화조명 + 감성조명	74A	5,950,000	주방 특화등(주방 레일등, 식탁 펜던트조명) + 감성조명 (거실 우물천정 간접등, 거실 매입등, 침실1 직부등)
		74B	5,660,000	
		74C	5,570,000	
		84A	6,310,000	
		84B	6,290,000	
		84C	6,360,000	
거실 아트월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74A	2,530,000	-
		74B · 74C	2,510,000	
		84A · 84B · 84C	2,850,000	
복도마감 업그레이드	히든도어+벽판넬+복도간접조명	74A	7,190,000	-
		74B	6,620,000	
		74C	6,370,000	
		84A	7,190,000	
		84B	6,810,000	
		84C	6,730,000	
침실2	슬라이딩 불박이장	전타입	2,170,000	-
침실1	침실1/드레스룸 프리미엄 일체형 불박이장+슬라이딩도어 중문	74A	6,660,000	-
		84A	7,190,000	
드레스룸 업그레이드	드레스룸 벽판넬 시스템선반 + 벽판넬 파우더장+슬라이딩도어	74A	5,130,000	-
		74B	3,450,000	

		74C	4,970,000	
		84A	5,890,000	
		84B	4,300,000	
		84C	5,450,000	
주방 업그레이드	유리 상부장+주방고급싱크볼+상판 매립형콘센트 +미드웨이 액세서리+상판/벽 세라믹타일+주방고급수전	74A	9,480,000	확장형 주방가구
		74B	8,610,000	식탁 아일랜드 일체형
		74C	8,560,000	식탁 아일랜드 일체형
		84A	12,190,000	주방 홈바 장식장
		84B	8,050,000	식탁 아일랜드 일체형
		84C	8,920,000	식탁 아일랜드 일체형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평형별 유상옵션 가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욕실특화 (단위 : 원, VAT포함)

구분	설치품목	약식표기	공급금액	비고
욕실 업그레이드	600*600 벽타일+세면기수전+샤워수전+ 욕조수전+세면대+비데일체형 양변기	74B, 74C	4,210,000	-
		74A · 84A · 84B · 84C	4,220,000	

• 세대 평면 특성에 따라 평형별 유상옵션 가구 구성이 달라질 수 있으며, 미건립세대는 반드시 분양자료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관련 유의사항

- 현관중문은 주택형에 따라 크기가 다르게 시공되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자재, 하드웨어 등의 사양이 동질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 거실 아트월 세라믹타일 옵션 미선택시, 기본 거실 아트월 마감은 1200*600각 타일로 설치됨.
- 침실1 드레스룸 특화형 미선택시, 기본구성은 파우더+일반 드레스룸으로 설치되며, 드레스룸 내에는 일반 시스템선반으로 가구 구성 및 디자인이 변경 설치됨. (조명 및 벽체 판넬마감, 슬라이딩도어 미설치)
-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에 따라 주방가구의 수납 구성, 수납장의 크기, 가구 디자인 및 디테일 등이 변경됨.
- 주방 업그레이드 옵션 미선택시 주방벽체 기본마감은 타일(300*600각), 주방상판 기본마감은 엔지니어드스톤이며, 주방 마감재 옵션에 따라 상판의 두께 및 가구 디테일 등이 변경됨.
- 상기 추가 선택품목은 일정시점 이후 시공을 위하여 소요자재를 선 발주를 해야 하므로 계약 후 선택사항 변경 및 해제가 불가함.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 선정된 제품의 형태, 설치 등의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선택시 사업주체가 선정한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음.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 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여건에 맞게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목과 비교 검토한 후에 선택하시고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설명을 들으신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타입별 추가 선택품목의 상품구성, 적용위치, 형태 등이 상이하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다른 타입의 품목은 설치 불가함.
- 추가 선택품목은 공사 시작 이후 자재발주 및 시공상의 문제로 계약변경 및 해제가 불가하며, 해지 시 위약금과 원상회복비용(실손해액)을 부담해야 함.

■ 추가 선택품목 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일정

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	우리은행	1005-004-784722	효성중공업(주)

납부일정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기간

-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계약금, 잔금) 납부일에 해당 금융기관 계좌로 입금(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상기 분양대금 및 발코니확장 공사비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당 사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 무통장 입금증은 계약체결 시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통장 입금증은 분양대금 납부 영수증으로 같음되며, 별도의 영수증은 발행되지 않으므로 필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금 납부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여 입금 후 입금증을 견본주택에 계약 시 제출하여야 함. 견본주택에서 수납 불가,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 이자는 없음.
- ※ 무통장 입금 시에는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단, 무통장 입금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 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발생하지 않음.
(예시 - 101동 1902호 계약자 → '1011902홍길동' / 103동 803호 계약자 → '1030803홍길동')

■ 공통사항	
---------------	--

공통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4.1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일부 개정으로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 공급면적(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 기준에서 주거전용면적만을 표기하도록 변경하였으며, 당사는 주택형 오기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음 •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란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 정리에 따라 실제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순위 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계약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에는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선순위 청약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입주자 선정비율(일반 공급 세대수의 50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 신청 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함 • 주택소유로 보지 않는 경우 등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함 • 보존등기 및 소유권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음(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 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면적은 소수점 4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소수점 2째 자리로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음 • 당 사업지는 공동주택(아파트), 근린생활시설 간 대지경계(구획)가 없는 공유 토지이므로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은 공부정리절차, 사업계획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에서 면적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법령이 허용하는 오차범위 내 또는 소수점이하의 면적증감은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이의제기 및 공급대금 정산을 사업주체에 요구할 수 없음(단, 정산 시 정산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적용하지 않음)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음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여 주변 경사지 및 시설, 조망권, 주변개발여건, 유해시설 현황 등을 확인하시기 바람,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추가 유상옵션이 전부 반영되어 시공되어 있으므로 기본 옵션형 및 발코니확장 시 제공되는 기본마감에 대한 마감내용은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에 표현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아파트의 공사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굴,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사업주체의 귀책사유 없이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 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공급현황을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입주지정기간 만료일(실입주일이 만료일보다 앞서는 경우 실입주일)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전기료, 가스비, 관리비 등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해야 함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당사와 무관한 사항임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 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음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아트월과 소파 설치 위치가 좌우 대칭되어 외부 조망이 달라질 수 있음)이 있음 •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 조경 공간(포장패턴, 식재, 놀이터를 포함한 시설물, 수경시설 등),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비상차량 동선 등)등은 실시공 시 인허가 관청 협의나 공사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평면, 입면, 마감재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계약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추후 현장여건 및 인허가 관청과의 협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반시설 도로선, 단지 내외부 경사지 용벽구간 재료 및 형태 등 - 단지 내 편의시설물, 안내시설물, 아파트 단지명, 동번호, 외벽 줄눈, 패턴 및 색상, 로고 등의 위치, 형태, 재질 등 - 조경식재, 조경시설물 및 수공간, 어린이놀이터(일반 1개소, 물놀이터 1개소, 유아놀이터 1개소), 옥외 주민공동시설, 휴게시설 및 맘스스테이션, 문주, 쓰레기분리수거장, 자전거보관소, 한전패드(단지의 전력공급을 위해 한전에서 설치 요구 시 설치됨), 포장계획, D.A(급배기구), 주차 경사로 지붕, 외부계단, 비상차량동선, 소방전용구역, 단지 레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벨차에 따른 출입구 및 캐노피 출입구의 위치 및 조경 등의 디자인, 위치, 설치유무, 개소 등 - 기타 주택법 및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사업계획승인 변경에 대해서는 주택법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입주예정자에게 통보 예정임) • 입주 예정 주택이 동간거리로 인해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을 침해받을 수 있으며, 또한 공동주택의 특성상 층간, 세대 간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약체결 이후, 단지 내(부대복리시설, 지상돌출물, 지상 쓰레기 관련시설, 단지 내 도로 등), 단지 외부 도로 등에 의한 변경 사항은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분양 후 단지 주변의 개발 및 현장 여건, 인허가 관청의 협의 등에 따라 주변시설이 변경될 수 있음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인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서(사업계획변경승인 포함)에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재 및 부대편의시설, 단지 조경(수목, 수공간 및 시설물), 커뮤니티시설 내부 운동기구 및 가구 등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음 • 본 아파트 입주 후, 본 사업부지와 인접한 도로, 건축물 및 시설물, 공동주택 등으로 인해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주변 개발계획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본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이후 "우리자산신탁(주)"와 "(주)피앤디유나이티드"간에 신탁계약이 종료(신탁목적의 달성, 신탁기간의 만료 등 신탁계약에서 정한 종료사유 발생, 신탁계약의 해지 등을 의미함)되는 시점 또는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 매수인의 명의로 이전된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본 건축물에 대한 분양계약 관리와 "우리자산신탁(주)"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는 분양계약의 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 "(주)피앤디유나이티드"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됨
<p>마감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 비확장형과 확장형의 마감재 내용이 상이하며, 기본형과 추가 선택 품목도 구분하여 선택할 수 있음 • 발코니 비확장형은 거실 아트월 타일, 우물천장, 각종 시스템가구, 발코니 창호, 전기오븐, 전동빨래건조대, 주방 상판 콘센트 등이 미제공이 되므로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반드시 마감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위세대 마감재는 주택형별에 따라 재질, 색상, 패턴, 크기 및 길이(가구 포함), 형태, 공간별 적용 아이템 등이 차이가 있으니, 계약 전에 견본주택 및 모형, 분양홍보물에 반영된 평면 등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상이할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으로 함 • 욕조 설치면에는 타일이 미시공되고 타일 나누기가 변경될 수 있고, 배수구는 욕실 내에 1개소만 설치됨 • 세대 내부 가구 설치 부위의 비 노출면은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욕실장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고정형 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후면,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와 접하는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음 - 주방가구 하부(난방 포함) 및 천장에는 별도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음 • 세대에 적용된 타일의 경우, 동일한 제품이나 본 공사시 견본주택과 달리 패턴(세라믹 박판 패넬은 자재 특성상 세대별 패턴이 상이함), 색상, 나누기 등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 마감벽체의 모서리에는 코너비드가 시공될 수 있음 • 공장생산 자재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의해 결정됨 • 내외부에 천연자재가 적용되는 경우, 자재 특성상 동일한 무늬나 색상의 공급이 어려우므로, 자재 자체의 품질상 하자의 판단은 K.S 기준에 명시된 내용에만 한정함 • 견본주택에 시공된 마감자재 중 사업주체와 시공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재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개시에 따라 동질, 동가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유상옵션인 빌트인가전 등이 설치되는 천장, 바닥(난방 포함), 벽체에는 마감재가 적용되지 않음 • 유상옵션인 거실 아트월 타일의 패턴이 규칙적이지 않고 불규칙하게 설치되며 색상, 줄눈나누기 및 간격이 다소 다를 수 있고, 시공상 요철이 발생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목창호, 시트패널(유상옵션) 등의 고정을 위해 타카자국이 보일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이 개선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욕실장 및 샤워부스의 디자인 및 디테일은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시공 디테일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내부 각 실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형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발코니 확장 및 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다소 축소될 수 있음
<p>견본 주택/홍보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74A, 84A, 84B 타입이 건립되었으며, 계약자의 동,호수 지정 시 동일 타입이라 하더라도 단지배치에 따라 견본주택과 달리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은 유상옵션이 전부 반영된 "풀옵션형"으로 시공되어 있으므로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 시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람, 발코니 외부 창호류, 세대 내 목창호류, 가구류, 유리,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브랜드 등은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당사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일정기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임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분양승인 신청서류 기준)과 전시품(조명, 가구, 그림, 장식물, 각종 소품 등)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며,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분양승인 및 계약 내용에 따라 시공됨(커뮤니티시설 포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단위세대는 계약자의 이해를 위해 제작된 것으로 대지 주변현황, 필요한 전기,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아 본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가스 정압기, 실외기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세대 모형도 실제 마감재 칼라와 다른 모노톤에 기본 확장형으로 제작된 것으로 본 공사 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음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공용 홀 및 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탑승위치 등)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공사 중 사업계획승인 변경도서 포함)에 준함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람 • 견본주택 내부에 설치된 전시조명, 인테리어 각종 소품가구(커튼, 블라인드, 침구류, 카펫, 책상 및 의자, 식탁 및 의자, 소파 및 테이블, 화장대 의자 등 포함), 백 패널 및 장식물, 그림, 디스플레이 가전제품(세탁기, 건조기, 밥솥, 다용도실 용품, 토스터, 커피머신, 의류관리기 등), 기타 전사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스프링클러 헤드의 위치 및 개수는 본 공사와 무관하며 본 공사 시 소방법에 맞추어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선홍통, 배수구, 점검구, 스프링클러, 조명기구, 조명 스위치, 콘센트 및 대기전력 차단콘센트, 온도조절기, 수전류 등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단위세대 내 설치된 시스템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냉난방겸용 제품으로 본 공사 시 냉방전용(난방불가)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되며, 장비사양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표시되거나 설치된 우/오수 배관의 위치, 선홍통과 수전의 위치, 온도조절기, 바닥배수구의 제품사양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음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 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 및 유상옵션이 포함 되어 있음 •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에 비치된(필요시 방문하여 확인)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음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과 선택품목, 전시품 등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과 전사용 조명, 설비 등은 부속배선·배관을 포함하여 시공·설치되지 않음 • 견본주택 세대입구 문틀은 전사용 프레임이 설치 되었으며 본 공사 시 일반 철재 현관문틀 설치로 인해 현관바닥 타일 나누기가 달라질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된 위생도기, 수전류(발코니수전 포함), 약세사리, 환기디퓨저, 시스템에어컨(유상옵션), 환기유니트, 바닥배수구, 선홍통(우수관), 온도조절기의 제품사양 및 위치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지 않은 환기디퓨저 및 세대내 스피커는 본 공사시 도서 기준으로 설치되으나 시공 중 일부 변경이 될 수 있음 • 견본주택 배치는 참고용이며 동의서 및 관련 POP가 우선이고 기 허가도서와 상이할 경우 동의서 및 관련 POP가 우선으로 적용 될 수 있으며 상이 시 설계변경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견본주택 방문 후 확인하시기 바람 •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물(인터넷, 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CG(단지조경 및 포장, 시설물 등의 컴퓨터그래픽 등)는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분양 계약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분양 및 시공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구획선과 시설물의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상의 결과에 따라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본 카탈로그 및 홍보물에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 결과, 인허가 등 사업진행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람 • 카탈로그 등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으로 계약 전에 현장답사 및 사전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람 • 각종 인쇄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및 실행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 또는 취소될 수 있으므로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공공시설 및 기반시설의 위치는 청약 및 계약시 견본주택 및 현장 확인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학교관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 사업지 학교 배치 예정은 아래와 같음 - 초등학교 : 풍무초등학교 배치 예정 - 중학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 및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중학교 신입생 배정업무 지침에 따라 중학생은 김포중학군(김포중, 김포여중, 감정중, 금파중, 풍무중, 양도중) 내 배치 예정이며, 1지망교 정원 초과로 학군 내 상대적 원거리 중학교에 배정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등학교 : 김포시의 경우 비평준화 지역으로 배정방법은 향후 김포교육지원청에 문의하시기 바람 • 기타사항 : 초등학교 통학구역 및 중학교 배정 방법 등은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 소관 사항으로 입주 시기 학생 배치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국공립 어린이집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 단지의 부대복리시설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설치 및 운영될 예정임. 다만, 「영유아보육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찬성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 등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반대하는 것을 서면으로 표시하지 않는 경우,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관할 지자체와 국공립어린이집설치 및 운영에 대한 협약 체결할 예정임

■ 설계관련 유의사항

구 분	내 용
단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파트,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의 외관디자인(마감재 패턴, 색채 및 사인물, 창호 색상 및 형태, 계단실 창호, 난간 형태 및 색상, 지붕 및 옥상구조물 형태 및 색채 등), 주차장 외벽과 옹벽의 형태, 색상 및 패턴, 외부계단과 문주의 위치 및 형태, 보도 포장 및 형태, 방음벽 등이 실시설계 및 공사 중 시공사 특화디자인 등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104동은 전용면적 29㎡, 37㎡, 46㎡로 구성되며, 전세대 임대주택으로 구성됨.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 의거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별도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확인하시기 바람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음. •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단지인접 도로의 폭/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인접부지와 연계로 인한 도로 레벨조정 등의 방편으로 옹벽 등 구조물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이 영향 받을 수 있음.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 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곽부에는 절토부/성토부 옹벽, 산벽, 조경석쌓기 등이 설치되며, 옹벽단의 마감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관리동 및 주민공동시설 시설 내용, 평면(운동기구 및 고정식 가구 배치 포함), 입면, 단면은 인테리어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외부 공간에 조성되는 수목의 종류, 수량 및 위치와 외부 시설물의 종류, 형태 및 위치 등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모형 및 각종 홍보물 이미지는 이해를 돕기 위해 축소 제작된 것으로 색채, 패턴, 마감 재질, 크기, 조경(수목의 종류, 위치 및 수량, 놀이터 및 휴게시설, 파고라, 수경시설 등) 및 각종 시설물(문주, 기계 및 전기 관련실 급배기구, 주차장 램프 캐노피 구조물, 외부 계단 및 엘리베이터실, 부속동 실외기 공간 등)의 내용이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며,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계약 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음 • 측량결과에 따라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커뮤니티시설, 층고 및 천장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대지 주위 도로폭, 도로선형, 조경 및 토목 시설물의 위치, 인접도로와의 레벨 차, 옹벽의 높이 및 형태, 공법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입주예정자 동의없이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하며,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품목만 시공되고 기본 제공되는 가구 및 마감재 등이 현장여건 및 인테리어설계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 외부 도로의 레벨에 따라 도로 경사도 및 도로접속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반 레벨(계획고)이 현장 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레벨은(근린생활시설 포함) 건물 입구 및 인접 도로와의 원활한 연결을 위하여 일부 구간이 낮아지거나 높아질 수 있음 • 공동주택 주차대수 1,207대, 근린생활시설 4대 총 1,211대로 계획되어 있으며, 주차대수 및 주차단위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지하1층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스템은 완속 48대, 급속 13대가 설치되고, 공사 중 현장여건에 따라 수량의 증감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음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서 본 공사 시 위치 및 개소가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경계 및 내부에는 한전 인입을 위한 변압기 및 전주, 맨홀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미관이 저하될 수 있고, 또한 한전 인입 정책 및 현장여건에 따라 각 시설물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건축 및 조경의 변경 등으로 인해 부가적으로 발생하는 구조, 설비, 전기, 토목, 건축물의 외관 등에 대해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지 주변 외부도로의 폭은 인접 건축물, 보도 등의 현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BI/CI(적용 시)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및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함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조망과 향, 일조량, 프라이버시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근린생활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내부의 실외기 공간, 쓰레기분리수거장 인접 세대에는 소음,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 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 및 건물 높이에 따라 일부 세대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음 • 단지 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주차출입구,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 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조명형 BI/CI 등을 설치할 경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로 노출되는 주차장 외벽은 부분적으로 그릴창이 설치되며, 지하층 특성상 우기에는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이 설치된 인접 동은 이용에 따른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냉난방시설에 따른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엘리베이터 홀(채광창 유무 포함) 등 공용부분은 공간 크기 및 설계 제약 등에 따라 형태, 재질, 크기, 색채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음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음 • 단지 내부에 전기·통신공급을 위하여 한전패드 스위치, 맨홀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는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내 CCTV는 범죄예방 및 입주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설치되므로 설치 및 촬영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관계 법령에 대한 위배로 보지 않음을 인지하여야 함 • 각종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지붕층 일부 또는 부대시설 인근에는 DA, 실외기 등이 설치되어, 인접한 세대는 장비의 소음 등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지하층에는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우수조 등(주거, 비주거 포함)이 설치되어 있어 소음, 냄새,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내부에 설치되는 집수정 및 집수정의 펌프로 인하여, 펌프 작동 시 소음, 진동 등이 발생하여 인접세대로 전달될 수 있으며, 집수정 펌프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저층부 세대는 이를 인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람에 이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로 추후 이로 인한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에 별개의 지하수 배수를 위한 영구배수펌프가 설치되어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지하주차장의 각종 배관(급수,급탕,난방,오배수 등)으로부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소방안전계획은 소방심의 및 소방기관의 현장실사 등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소방차의 진입과 회전, 정차 등을 위한 조경배치와 동선의 형태, 규모, 재질 및 기타계획이 입주자의 동의없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소방 및 안전과 관련된 변경사유에 대해서는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소방안전매트 설치구간을 계획하여야 할 경우, 해당 구간은 조경식재가 불가할 수 있어 일부 저층세대의 프라이버시 침해가 발생 가능하고, 추후 소방서 협의에 따라 안전매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지 외 기반시설(도로, 공원 등)은 시공사의 시공 범위가 아니며 세부사항은 해당 기관에 확인하시기 바람에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단지의 북측 소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시설이용에 따른 소음, 빛공해 등에 의한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서측에는 폭 24m 도로, 단지 동측에는 25m 도로가 인접해 있으며 단지 북측에는 폭 16m 신설도로가 계획되어있고 대지경계선 밖 도로는 단지내 소유가 아니며, 실시공 시 형태, 높이, 레벨계획 등이 상이할 수 있음 • 단지 남측에는 풍무국립체육센터 및 근린공원, 유수지가 위치하여 있으며 이로인해 이용객 및 차량들로 인한 빛공해 및 소음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음 • 단지 남동측 직선거리 10km내외에 김포공항이 위치하며, 항공기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항공기 운항 패턴 및 운항내용(종류, 횟수)에 따라 예상 소음도가 초과하여 발생할 수 있음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단지주변 경계부는 현장 시공여건, 현황 레벨, 인근 도로레벨, 방음벽 등에 따라 단차부 마감에 대한 형태, 재질 등이 실시설계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이로 인한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상품개선 및 기능, 구조, 성능,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문주, 도로선형, 부대시설의 추가 및 삭제, 위치 이동, 형태 등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생활폐기물(음식물, 재활용 등) 분리수거, 보관시설 및 장소는 수집운반차량 통행이 용이한 곳에 설치함에 있어 설치장소 인근 세대의 악취 및 해충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위치를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철거 및 이전 설치를 요청할 수 없음 • 쓰레기 분리수거장 위치는 지자체 조례, 유관부서 협의 등의 최종 검토 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의 동별 주차 배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고 동별 주차영역을 한정할 수 없으며, 각 동 출입구까지의 동선 길이와 전실 및 홀의 형태, 크기 등이 다름 • 단지 주변 도로와 단지 내 레벨 차이로 인해 단지 및 주동으로 진입하는 보행로에 단차(계단) 또는 경사도가 형성될 수 있으며, 그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CI 및 BI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신축되는 인접 건축물 및 공동주택에 의해 조망 및 일조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주동 주출입구 홀,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지붕 등은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사용으로 인한 피해발생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음 • 단지 내 외부에 계획된 대지레벨 차이에 의해 반영된 조경석, 난간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형태, 크기, 길이,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지하 선큰, 관리동 등에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인접한 세대는 사생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맘스스테이션(주출입구 인근 1개소 설치)은 통학차량 정차가 가능하게 계획되어 있어 소음, 진동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 기타 생활환경의 제약이 있을 수 있음 • 자전거보관소는 각 동 필로티 내부에 설치되며 향후 위치(필로티 내부 또는 외부) 및 설치 대수는 변경될 수 있음 • 주민의 통행과 비상 시 소방작업 등으로 인해 자전거보관소의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 비상차로 구간(소방차량 활동공간 및 통로, 공기안전매트 등)은 인허가과정에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고 이로 인해 비상차량 및 소방차량 정차공간 확보를 위해 보도 및 조경, 바닥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음 • 공기안전매트 계획구간 내 조경은 관련 규정 및 관계 기관 협의에 따라 식재(교목, 관목 등)가 불가하여 잔디로만 마감될 수 있음 • 단지 조경(녹지, 조경시설 등)에 조성되는 형태 및 모양은 본 시공 시 분양 홍보물 및 모형과 다르게 설치될 수 있음 • 단지 내 조경 및 조경수 식재 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 및 식재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단, 규격이나 수량의 변경이 있을 시 당초 계획보다 동등 이상으로 시공됨), 관계 기관 심의 결과, 시공과정 등에 따른 조경시설물에 따라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음 •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수경시설과 물놀이터를 포함한 어린이놀이터 인접동은 시설 이용에 의한 소음, 진동,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있을 수 있음 •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 도로선형 등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단지 내 도로 등의 경사도 및 단지레벨은 시공 중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조정될 수 있음 • 단지 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과정, 법규변경, 현장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계약서상의 유의사항을 필히 참고하시기 바람
주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위세대 창, 공용부 창의 열림 방향, 크기 및 위치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동 저층부의 석재마감 패턴 및 줄눈의 간격은 디자인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주차장 외벽 및 PIT층 외벽 등에는 일부 석재질감 도장이 적용됨 • 아파트동 저층부 석재마감은 동별로 적용 부위가 레벨에 따라 1~3개층 범위에서 동별로 상이하게 적용되므로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주동 및 부대시설의 장애인 램프 위치/길이, 점자 블록 위치/개소 등 장애인 관련 시설은 지자체 관련부서 협의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콘크리트 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과 아파트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의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 폭, 연결층 및 층수는 각 주동에 따라 다르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지하주차장에서 아파트 지하층 출입구까지 접근 동선이 주차구획, 장애인주차구역 등으로 일부 동은 다소 불편할 수 있음 • 아파트 로비, 필로티(벽 및 기둥 석재뿔칠 또는 지정석재), 공용홀 등의 평면과 입면 계획(재료, 디자인 등)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주동 필로티층 상부에는 주택관련 법규에 따라 주동 출입동선 및 기타 보행자 안전에 필요한 부위에는 캐노피가 설치될 수 있으며, 캐노피 주변 세대에는 우수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외부 입면의 형태(옥상 조형물, 외벽줄눈 문양, 저층부 석재, 동 출입구), 재질 및 색채 등은 구조내력확보,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음 • 건물의 가스 입상배관은 실외에 설치되므로 건물 외부 마감에 대한 변경이 있을 수 있음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에는 단지 내외간의 레벨 차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전/후/측면에 경사면 처리공법에 따라 옹벽, 보강토블록, 자연경사 처리구간이 설치될 수 있음 • 지하층 내 유지·보수 점검을 위한 PIT 내부의 경우 천장 및 바닥, 벽체부의 마감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하주차장 천장의 일부 구간에 상부 실로 인해 설치되는 단열재 등은 변경될 수 있음 • 입면 몰딩 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지붕층 난간대 형태/설치위치는 안전성과 입면을 고려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지붕/옥탑층(구조물 포함) 재료 및 형태/구조, 하부석재 디자인 및 몰딩, 외벽 및 측벽 문양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음.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경관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 받을 수 있고, 야간경관조명 설치 시 이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상승될 수 있으며, 일부세대는 야간 조명에 의한 간섭이 있을 수 있음 • 각동 저층 세대는 단지 내 보도, 차로, 비상차로, 쓰레기수거차량동선 등의 설치시설에 따른 시각적 간섭 및 소음, 환경권 침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계약 전 이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함 • 엘리베이터 승강로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고 계약 바람 • 엘리베이터의 속도 및 규격·사양은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검토한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 엘리베이터는 준공 전 공사용 운행 등 시험운전을 거쳐 이관되며, 이에 따른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외부 입면계획에 의해 장식물·동번호 등이 외벽에 설치될 수 있음. 모형과 홍보물과 달리 변경 설치될 수 있음 • 아파트 및 부대, 복리시설의 각종 기계설비, 덕트배관 및 전기통신용 케이블 트레이 등의 경로는 주차장 상부 공간과 엘리베이터홀 천정부분 등을 공동 사용하며, 배관 배선이 노출될 수 있음 • 제연구간에 해당되는 엘리베이터 홀과 연계된 단위세대 현관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민원은 제기할 수 없음 • 엘리베이터 홀은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에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음 • 지붕에 설치되는 우수 처리를 위한 배수구의 위치가 변경되거나 개소가 축소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부대 복리시설 / 근린 생활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형 및 각종 홍보물(분양홍보물, 전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홍보물 상의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내외부 디자인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내외부 마감재 색상, 재질 및 패턴, 내부 평면 및 구조, 창호 재질 및 형태 등은 실시설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층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각 실의 위치 및 평면구획은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외부재료 및 입면형태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층 변경에 따라 일부 계약면적은 계약 체결이후 변경될 수 있음. • 경비실 및 차단기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 커뮤니티, 어린이집, 경로당, 관리사무소 등의 실외기는 외부 또는 지붕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진동, 수증기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 세대의 환경권(조망, 일조, 소음 등)이 침해될 수 있음 • 단지 내 자전거 보관소 설치로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쓰레기분리수거장 및 주차장의 운영·유지·보수·관리 방안은 추후 관리주체가 결정하여 운영함.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동별 주차 형평성을 고려하여 계획되었으나, 모든 주차구획은 구조적으로 동별, 세대별로 구획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주차구획 운영은 관리주체 책임임 • 차량진출입, 경사로 부분은 차량통행 시 차량경고등 및 경고음, 노면마찰음 등으로 인한 빛 공해 및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주차장 차로 높이와 주차구획 유효높이는 분양 후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일부 대형차 등의 진입이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람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지상주차장 바닥 에폭시코팅의 경우,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마감재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단지 내 상가)의 건축계획 변경에 따라 규모가 일부 변경될 수도 있으며, 형태, 색상, 외관, 마감재, 도로에서의 진입 레벨 등도 공동주택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의 옥상부와 커뮤니티 시설 옥상부에 실외기가 설치됨으로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소음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단, 실외기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택 계약자의 경우,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면적 과다, 공용시설물(진출입구 등) 공동사용 등과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 관리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근린생활시설관련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대시설의 냉난방기, 환기설비 등은 구조, 마감 문제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근린생활시설 각 세대의 천정공간 내부에 인접세대를 위한 가스배관 및 에어컨배관, 위생배관, 전기배관 등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으며, 추후 임의로 해당 시설을 철거할 수 없으며, 이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음 • 커뮤니티 및 부대복리시설의 천정고(내부높이)는 시공성 및 설비, 전기 배관 등의 간섭 등으로 인해 변경될 수 있음
단위 세대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적법하게 설치됨 • 단위세대의 거실 및 침실의 천장고는 2,300mm(무물천장은 2,400mm임)이며,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음 • 세대 안목치수는 발코니 비확장 시 마감기준으로 산정되었으며, 발코니 확장 또는 유상옵션 마감 적용에 따라 각 실별 내부 안목치수가 다소 축소될 수 있음 •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나,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공간구성 및 형태, 마감재 수준 및 내용이 다르게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창호의 형태 및 사양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견본주택에 설치되는 PVC 창호 및 가구 등은 견본주택 용으로 본공사 시 입찰에 의해 동등 마감의 제품으로 선정하여 시공됨 • 발코니 확장 시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일부 벽체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창호 및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 등이 생길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소비자의 관리부족으로 인한 하자보수는 사업주체에게 요구할 수 없음 • 설계도면과 견본주택이 상이한 경우, 견본주택을 우선 적용함. • 세대 내부벽체는 실시공시 조적, 경량벽체, ALC블럭 또는 CON'C 벽체로 변경되어 시공 될 수 있음. • 세대내부가구(신발장, 붙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가 설치되는 부위의 바닥, 벽, 천장과 거울 설치부위의 배면에는 최종 마감재가 설치되지 않음(단, 주방가구 바닥은 에폭시 코팅마감) • 도면상 바닥레벨은 평균두께를 표현하였으며, 실시공시 바닥 구배 등을 고려하여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 상하/좌우 인접세대의 유무, 인접세대의 확장 유무에 따라 일부 발코니 벽체 마감선이 단위세대 평면도 및 다른 세대와 상이할 수 있음. • 욕실턱의 높이는 물넘침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상관없음. • 시공에 포함되어 설치되는 가구의 경우 전기 배선 및 마감재 설치, 기타 사유와 관련하여 설치 완료 후 이동이 불가함 • 작업통로로 사용하기 위한 세대간 벽의 임시 개구부는 조적벽 또는 경량벽체로 시공됨 • 콘크리트 벽체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및 결로 방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콘크리트 벽체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콘크리트 벽체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를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다소 축소되어 시공되어질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 개선 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되어질 수 있음 • 타입별로 기본제공 품목 및 유상옵션 품목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주동 저층부 석재 등 마감 적용 시, 별도 마감적용 부위의 세대 및 공용부 창호의 폭과 높이가 마감을 위한 필요한 치수만큼 축소 또는 외부 마감재 노출될 수 있음 •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창호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 내부에 자연 환기량 감소 및 습도 증가 시 결로현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함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및 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람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음 • 각 세대별 현관 전면은 엘리베이터 홀 또는 복도에 창호가 없어 채광 및 환기가 부족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세대별 현관 전면에 엘리베이터홀 설치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청약 전 상담 및 도면을 확인하여야 함 • 실외기용 대용량 전원은 반드시 실외기실에서 공급받아야 함 • 일부 발코니 및 다용도실에는 배수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본 공사 시 다용도실, 실외기실, 욕실, 현관, 발코니 등 단차부위 시공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경우, 바닥구배 시공 및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에 따라 타일 나누기, 천장 높이 및 단차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음 • 오수 및 우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은 견본주택 내용에 따르되, 위치 및 개소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벽 및 세대간벽, 층차이부분 등에 단열재가 설치되는 부위는 결로 발생으로 인한 하자방지를 위하여 동일한 주택형이라도 부분적으로 벽체구성 및 마감의 바탕이 일부 다를 수 있음 • 경량벽체인 경우, 중량물 설치나 못박음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중량물 설치 및 못박음 시에는 벽체의 파손 또는 설치된 중량물의 탈락에 유의하여야 함. 천장석고보드 부위와 벽체석고보드 부위는 전용철물을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함. • 단위세대별 치수에는 천장 몰딩이나 하부 걸레받이 등의 치수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입주 시 실측을 통하여 가구, 가전제품 배치를 계획하시기 바람 • 욕실벽(PD 포함) 및 기타 조적벽 등은 현장 시공여건에 따라 일부 비내력 골조 혹은 경량벽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그릴의 경우 수동개폐형 제품으로 시공되며, 에어컨 가동전 반드시 입주자가 직접 개방 후 이용해야 함 •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세대내 설치되는 통신 단자함, 분전함의 위치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노출시공 됨 • 세탁기 및 건조기 용량 및 모델에 따라 발코니 내 병렬 또는 상·하 직렬 배치가 불가하오니, 입주 후 배치를 결정해야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각 세대에 설치된 대피시설은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 내부 안목치수 등은 인테리어 마감이 반영되기 이전의 치수로(기본 거실 아트월 포함) 옵션 등 선택 시 일부 축소됨
<p style="text-align: center;">발코니 / 실외기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코니(실외기실, 세탁실 포함)에는 드레인(배수관) 및 선홍통(우수관)이 설치될 수 있고, 사양, 위치, 개소는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거나 급수가 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되었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정,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에 설치되는 수전(세탁기, 손빨래,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및 기타 발코니의 외부창호 및 난간턱 높이와 수벽의 높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다용도실에 설치되는 덕트, 에어컨배관, 스프링클러 배관 등이 노출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음 • 침실1 발코니 옆에는 설치되는 하향식 피난구는 층별, 세대별로 위치가 상이함 • 각 세대의 하향식피난구실 내부에는 하향식 피난 사다리가 설치되며, 디자인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화재시 하층세대로 피난 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창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및 공용부 창호의 크기, 두께, 사양 개폐방향, 개폐범위, 창호 프레임 등은 시공 시 선정되는 제품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창호나누기 및 크기는 견본주택 사양을 우선 적용함 • 도면에 표기된 창호 치수와 실시공되는 제작 치수는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저층부 외부 석재마감 구간의 단위세대 및 코아부에 설치 창호는 마감 시공을 위해 일부 창호의 크기가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실외기실 출입문 재질은 결로 등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해 재질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부에 설치되는 철재문 및 방화문 류의 설치 위치, 크기, 형태, 디테일은 시공성 및 성능개선을 위해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음 • 창호의 열림 방향 및 규격 등은 입주자의 사용 환경 및 아파트 내/외부 마감 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승인 변경 및 경미한 설계변경을 통해 견본주택의 형태와 일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은 내풍압을 고려하여 세대별, 층별, 침실별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음 • 아파트 내외부 창호의 유리사양 중 Low-E 유리의 설치 위치는 결로 및 단열 등의 성능을 고려하여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음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 내 통합 분전반, 통신 단자함, 콘센트, 통신수구 및 스위치 등의 마감기구 사양 및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다용도실의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위치에 따라서 가스계량기 위치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내 가스배관은 인덕션 유상옵션 선택 시에도 시공될 수 있음 • 세대 내 가스배관은 노출 또는 은폐배관으로 시공될 수 있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주방 배기 시스템은 직배기 시스템으로 천장내 호스 또는 덕트등이 설치 되고, 외벽에 CAP 마감이 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및 소방설비는 견본주택용이며, 본 공사 시 스프링클러 배관관경 및 기준개수 등 소화시설물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음 • 설비배관과 관련하여 PD 점검구가 세대 내에 설치될 수 있고, 세대 욕실 천장에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실내 점검구(피트층 포함)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도 변경될 수 있음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기 노출되며, 일부는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위한 각종 배관, 배선 및 가스배관 등의 루트로 활용될 수 있음 • 세대 내 동체감지기는 1층, 2층 및 최상층 발코니에만 설치됨

- 본 공사 시 싱크대 하부 난방분배기에 연결된 노출 온수파이프는 보온 시공을 하지 않음
- 주방 발코니의 가스미터기 설치 위치에 따라서 가구 상부장 내부 깊이가 변경될 수 있음
- 주방 렌지후드에는 소방법규에 따라 자동식소화기가 설치되며, 상부 덕트의 크기는 변경될 수 있음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정하였으며, 위치 변경은 불가함
- 세대별 급배기를 통한 환기를 위하여 세대 환기장치가 실외기실 상부에 설치될 예정이며, 천장마감 없이 노출된 형태로 설치될 예정임
- 각 세대 내 환기구 위치 및 개소는 시공도서에 준해서 설치될 예정이며, 성능개선 및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천장형 에어컨은 추가 선택 품목으로 제공되며 미선택 시 74타입이상에 냉매배관 2개소(거실 스탠드형 기준 1개소, 침실1 벽걸이형 기준 1개소)가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 되지 않음
-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여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음
- 가스배관, 가스계량기, 감지기 등의 설치로 일부 가전제품의 경우 다용도실에 설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여유공간을 필히 확인 바람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음
- 상부 세대가 발코니 비확장형 세대일 경우 천장 단열재 설치로 인해 우물천장의 폭, 깊이가 축소될 수 있음
- 천장 속 각 종 배관 또는 덕트 등으로 인해 우물천장 치수가 변경될 수 있음
- 커튼박스의 깊이 및 너비는 배관 설치, 환기덕트 설치, 화장실 배기호스 등에 따라 커튼박스의 깊이 및 너비가 변경될 수 있음
- 욕실 내 설치되는 배수구 및 환기팬, 양변기, 세면기, 수전, 휴지걸이, 수건걸이, 슬라이드바의 위치와 천정점검구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배관을 점검할 수 있음
- 욕실내 샤워부스바닥과 욕조바닥에는 난방코일이 설치되지 않으며, 별도 제어용 온도조절기가 없음
- 욕실 환기팬의 위치 및 사양은 실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화장실 물내림 소음이 발생할 수 있고, 욕실내 습도, 온도가 높아 양변기 물탱크 주변에 자연현상으로 결로가 발생할 수 있음
- 발코니 및 욕실의 사용성 및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바닥배수구의 위치, 설치 유무, 설치 개수 등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분명히 인지하여야 함
- 부부욕실 바닥 배수 성능을 고려하여 샤워부스의 설치 위치 및 규격은 변경 될 수 있음
- 세대욕실 일부분만 바닥난방이 설치되며, 욕조 하부 및 샤워부스 내에는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음
- 욕실, 다용도실, 발코니, 드레스룸 및 팬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별도의 온도조절기가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른 온도조절기에 의해 통합 제어됨
- 일부발코니에는 우수수 배관, 바닥드레인 및 수전 등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소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세대내 발코니 구간에는 우수배관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생소음은 하자의 대상이 될 수 없음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
- 배수구 미사용시 (장기간 미사용시 악취 방지를 위한 봉수에 물이 증발) 배수관 내부의 악취가 전달될 수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배수구에 봉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배수구에 물을 흘려 봉수를 유지해야 함
- 다용도실(발코니2)이 협소하여 입주 후 보일러 점검을 위해서는 세탁기 이동이 필요하니 사전 확인 바람
- 실외기실 갤러리(루바)창의 상부에 장비, 설비배관, 주름관 등이 설치될 수 있음
- 세탁기 등을 두는 발코니 및 다용도실의 경우 발코니 확장유무와 관계없이 비난방 공간임
-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주방 상부장 가구 내부 깊이는 변경될 수 있음
- 단위세대 현관, 현관팬트리, 비확장발코니, 실외기실 등에는 바닥난방이 시공되지 않으며, 욕실의 경우, 마감여건상 일부 구간에만 바닥난방이 시공됨
- 각 세대 내 환기 시스템은 본 공사 시 설치위치에 따라 장비 및 덕트 등이 노출되며, 건축 입면 및 내부마감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각 타입별 설치위치(실외기실, 하향식 피난구실, 혹은 다용도실 상부)에 필터 교체 및 유지 관리를 위해 장비와 연결 덕트가 노출로 설치되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음
- 주방발코니 상부로 환기 설비배관 등이 노출되어 미관이 저하되지 않도록 천장을 시공할 경우 층고가 현재보다 낮아질수 있음
- 세대 전열교환기는 실외기실, 다용도실에 노출설치되며, 장비 하부에 유지보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두어야 함
- 세대 주방 및 욕실배기가 당해층 직배기 방식으로 인접 세대에서 배기되는 냄새가 전달될 수 있음
- 동별 외부 가스배관 입상에 2층까지 방법용 배관카바가 설치됨
- 가스배관이 가스레인지 좌,우측 벽을따라 가구 상부장 뒤쪽으로 은폐되어 설치되거나, 벽체 매립 또는 노출로 시공될 수 있음

- 주방 싱크대 하부장 내부에는 바닥난방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어 공간이 협소할 수 있음
- 실외기실은 실외기 1대 설치만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며, 부분설치로 실외기 2대 설치가 안되는 점 인지하여야 함
-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와 제연팬의 급기/배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각동 PIT층, 필로티 및 지상층에 설치되므로 사전에 도면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위치 및 개소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또한 이와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의 발생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있을 수 있음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도선이 설치되며, 일부 동 및 일부 층은 아파트 외벽에 측리용 피뢰침이 시공되며, 피뢰침에 의한 진동, 소음에 따른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람
- 무인택배보관소는 주차장 진출입층인 지하 1층에 해당되는 주동 출입구 인근에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세대수의 10%~15% 범위 내에서 동별 통합형 방식으로 설치될 예정이나,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방식은 변경될 수 있고, 특정 동 또는 호수에서 거리가 상이하므로 이에 대해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가로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라인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의 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 「전기통신사업법」 제69조의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24조의2 등에 의거, 기간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및 설치방법 등에 대해 협의하였음
-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기 바람
- 이동통신설비의 중계장치 설치 위치는 옥상층 - 102동, 103동, 105동, 107동, 108동 / 지하층 - 지하 2층 헬룸 2, 헬룸 5, 헬룸 8 3개소에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설치 위치 변경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TV 안테나 설치 위치는 106동에 설치 예정이며, TV 안테나의 위치는 수신상태 및 현장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하고 TV 안테나에 의한 진동, 소음, 전자파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음
- 세대 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음
- 추가 선택품목(유상옵션) 선택에 따라 전기분전반 내 전기차단기 설치가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옵션을 선택하지 않을 시 해당 기능을 위한 전기차단기는 미설치 됨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이슈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음
- 세대 내 가구 일체형 조명기구와 같은 복합기구 적용 시, 해당 기구는 일괄소등 스위치의 동작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
- 가스, 전기,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 옵션에 따라 가스, 전기 차단기가 설치되며, 추가 설치 및 변경설치를 요구할 수 없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 제21호에 의거「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64조에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표기

업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 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방법을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보일러(다목)	적용	가정용보일러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 제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수도법시행규칙」제1조의2, 별표1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2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해당없음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주차장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

구 분	주차장 차로의 높이	주차장 출입구의 높이
지하1층	2.7m	2.7m
지하2층	2.3m	2.3m
지하3층	2.3m	2.3m

※ 본 아파트의 주차장 및 출입구의 높이는 공사시 부착물 등에 따라 실 유효 높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라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능력 공개에 의거 메르칼리 진도등급을 기준으로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함

구 분	등 급
내진능력	VII-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산정한 수정 메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VII)로 표기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 사 명	(주)영화키스톤건축사사무소	(주)진광건설엔지니어링	상지이앤씨(주)	(주)이가건축사사무소
감리금액	₩ 3,600,073,240원	₩ 757,834,400원	₩ 835,321,245원	₩ 176,000,000원

■ 「주택법」 제39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6. 30.>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김포 풍무 양도지구 1단지 공동주택
2. 신 장 자: 우리자신신학㈜
3. 대 지 위 치: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7번지 일대
4. 성 능 등 급

가. 소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광합성작용 차단성능	★
2. 광합성작용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고층승강기구 옆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환경영향 급배수 소음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성능등급
21. 자연지반 녹지축 조성	★
22. 생태연속축 조성	★
23. 생태사양(방파벽) 조성	★
24. 침하방지·오염물질 저방출 저층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열치단 방지성능 확보	★★
27. 저층승강구조물측면 방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층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차나·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차안거주자장 및 자판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근접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열치단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생활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접근성 확보	★
8. 차안거주자장 시설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종물질을 사용 금지	★★
10. 환경성상인 계층(IPA)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차용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장 차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저탄소 건축자재의 표시방법 설치	★
16. 병행관리	해당없음
17. 정물 및 유출방지수 이용	★★
18. 물수령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다. 환경 관련 등급
- | 성능항목 | 성능등급 |
|-----------------------------|------|
|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해당없음 |
| 2. 고도된 자재개발 지원 | 해당없음 |
| 3. 표층사 절토·성토형(영양기·통합기용 탄 양) | 해당없음 |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해당없음 |
| 5. 에너지 성능 | ★★★ |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능 장치 | ★ |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 |
| 8. 차안거주자장 기술의 적용 | ★★ |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종물질을 사용 금지 | ★★ |
| 10. 환경성상인 계층(IPA)의 사용 | ★★ |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 |
| 12. 차용순환 자재의 사용 | ★★★ |
| 13. 유해물질 저장 차재의 사용 | ★★★ |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 |
| 15. 저탄소 건축자재의 표시방법 설치 | ★ |
| 16. 병행관리 | 해당없음 |
| 17. 정물 및 유출방지수 이용 | ★★ |
| 18. 물수령 기기 사용 | ★★★ |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 |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5월 0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210mm×297mm(백상지 130g/㎡)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건축물명 김포 풍무 양도지구 1단지 공동주택
건 축 주 우리자신신학㈜
준공(예정)일 -
주 소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483-7번지 일대
층 수 지하 3층, 지상 29층 / 866세대
연 면 적 133,269.419㎡
(용기면적 132,866.7100㎡)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기밀)
설 계 자 ㈜인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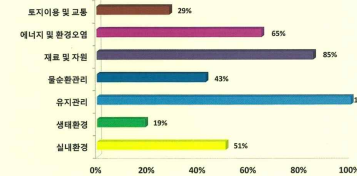
인증번호 01-958D-SP-2025-0413-7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유효기간 2025.5.9 - 사용승인일

【인증 등급】

인증등급 우량등급(공동주택)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인증등급표 제2023-329호
유효기간표 제2023-172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 평가】 종합등급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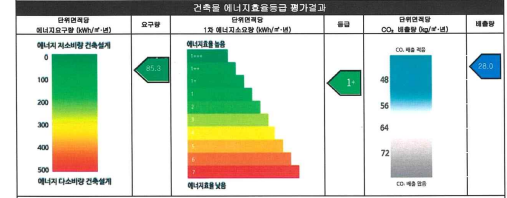
2025년 5월 9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KQA인증기관 인증번호 01-958D-SP-2025-0413-7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 <개정 2017.1.26.>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김포시 풍무 양도지구 1단지 공동주택(건축물사-1912)	인증번호	: 01-주-제-14-0056
건축연도	: 20280530	평가자	: 1. KQCA
주 소	: 경기도 김포시 양도동56번길 67-10A	인증기관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 지층 3층, 지상 16~29층 (총 28층)	인증기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133269.4197㎡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만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 1+등급
설 계 자	: (사)인한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표	: 1+등급



구분	단위연계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계등급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계등급 (1차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연계등급 (CO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냉방	47.0	65.6	65.0	17.6
급탕	30.7	35.1	25.9	7.1
조명	7.6	5.0	13.8	2.4
합계		7.6	5.6	0.9
합계	85.3	127.7	110.3	28.0

별 단위연계등급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분에서 요구되는 단위연계등급 에너지량
별 단위연계등급 에너지소비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연계등급 에너지량
별 단위연계등급 1차 에너지 소비량 에너지소비량에 전열, 가열, 조명, 환기, 급탕, 급탕, 급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연계등급 에너지량
별 단위연계등급 CO2 배출량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연계등급 에너지량에 CO2 배출계수를 곱함
별 단위연계등급 에너지소비량 [V] 표기방법은 [V] 표기방법과 동일함
별 단위연계등급 건축물용 에너지효율등급 평가에 있어, 설계단계에 따라 인증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 단위연계등급 1차 에너지소비량 등급을 통해 다른 보정계수를 반영할 수 있습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제 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32등급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5년 04월 25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장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의 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해링턴플레이스 풍무(1BL)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82025-101-0003600호	₩ 320,093,80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공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공 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3조 (보증채권자 등의 협력의무)

- ①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사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조사의 협조 및 「주택법 시행령」에 따른 입주예정자대표회의 구성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증채권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합니다.
- ② 보증채권자는 공사가 선정한 승계사업자 또는 시공사의 공사를 방해해서는 안됩니다.
- ③ 분양권양수자는 양도자가 이미 납부한 입주금영수증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②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려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같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관리형 토지신탁 특약사항

- ① 본 분양대상 목적물은 시행위탁사 (주)피앤디유나이티드와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주)간에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사업비의 조달의무를 시행위탁사가 부담하는 신탁)에 따라 우리자산신탁(주)이 공급하는 건으로서, 우리자산신탁(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른 시행수탁사로서의 의무사항만을 부담할 뿐이고, 본 분양 건축물에 대한 실질적이고 최종적인 분양사업자는 시행위탁사 (주)피앤디유나이티드임을 매수인은 인지하고 동의한다.
- ② 시행수탁사 우리자산신탁(주)은 시행위탁사 (주)피앤디유나이티드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에 따라 오로지 신탁재산 및 신탁계약의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할 뿐이고, 매도인으로서 발생하는 일체의 의무(분양해약금반환, 입주지연시의 지체상금 책임 등)는 시행위탁사이자 실질적 사업주체인 (주)피앤디유나이티드 가 부담한다.
- ③ 본 사업 관련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이 해지 및 종료(정산 포함)되는 경우 또는 매수인에게 분양목적물의 소유권이전이 완료되는 시점 중 "선도래 시점"에, 우리자산신탁(주)이 분양계약상 매도인 지위에서 가지는 모든 권리와 의무(하자보수 및 그에 같음하는 손해배상의무 포함)는 계약변경 등 별도의 조치 없이도 시행위탁사 (주)피앤디유나이티드에게 면책적,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이에 대하여 매수인은 이에 동의하고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확인한다.
- ④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위탁사 (주)피앤디유나이티드 또는 시공사 효성중공업(주)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동의한다.
- ⑤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대출금상환 등 해당 분양사업과 관련된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
- ⑥ 매수인은 반드시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 계좌에 분양대금을 입금하여야 하고, 우리자산신탁(주) 명의 분양수입금 계좌로 입금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 ⑦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중도금대출 제한비율 강화, 담보대출 제한 등), 금융기관 미확보에 따라 중도금대출, 담보대출이 제한(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제한(축소), 대출불가에도 불구하고 분양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 ⑧ 시행위탁사 (주)피앤디유나이티드 또는 매수인은, 분양계약체결 또는 전매 등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유 발생 시 해당 기한 내(30일 이내)에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 ⑨ 우리자산신탁(주)의 사전 승인 없이, 시행위탁사 (주)피앤디유나이티드와 매수인간에 또는 시공사 효성중공업(주)와 매수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설정된 경우, 해당 별도의 특약은 우리자산신탁(주)에 대해서는 일체 효력이 없다.
- ⑩ 본 특약사항의 내용은, 본 계약의 어느 조항보다도 우선하여 적용한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사업주체)	시행위탁자	시공사
상호	우리자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피앤디유나이티드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1, 13층(역삼동, 삼성빌딩)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56길 85, 36층 11호(구의동, 테크노-마트2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67, 27층 외 (회현동1가, AK타워)
법인등록번호	110111-2003236	110111-8227856	110111-6770154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사이버 모델하우스 : 해링턴플레이스 품무 홈페이지 (<http://www.해링턴플레이스품무.com>)

■ 견본주택 위치 및 분양문의 : 해링턴플레이스 품무 견본주택(경기도 김포시 품무동 369-4) / ☎ 1877-9877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보다 자세한 공사 범위 및 마감재의 확인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람